발 간 등 록 번 호
11-1550000-001653-01

문화재관계법령집

2016. 04

문화재청

※ 이 법령집은 현재(2016. 4.)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발간하였습니다.
– 시행 예정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 목 차

- **문화재보호법** (법·시행령·시행규칙) ····· 1
- **문화재위원회 규정** ····· 141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시행령·시행규칙) ····· 149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209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시행령·시행규칙) ····· 271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337
- **문화재보호기금법** (법·시행령) ····· 433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시행령) ····· 443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시행령·시행규칙) ····· 463

문화재보호법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목차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17	제1조(목적) ····· 17	제1조(목적) ····· 17
제2조(정의) ····· 17	제2조(정의) ····· 17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 20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20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20		
제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 21	제3조(문화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 21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 22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22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 23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 25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 25	
제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 27	제6조(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 ····· 27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 28	제7조(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 28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 29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29	제7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 29	제2조(검토의견서) ····· 29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 29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 32	제8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 32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 32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 32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 34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 34		제4조(문화재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 34 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 35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 35 제7조 삭제 ····· 37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37		
제17조의2 삭제 ····· 37		
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 37	제9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 37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 38	제10조(세계유산등의 보호) ····· 38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 ····· 39		
제21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 40		
제22조(지원 요청) ····· 41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 41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 41	제8조(조사보고서) ····· 41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 42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 42
제2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 44	제12조 삭제 ····· 44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 44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 44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 45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 45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45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 47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 47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 47	
제29조(지정서의 교부) ····· 48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 48
		제11조 삭제 ····· 49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 50		
제31조(지정의 해제) ····· 50	제18조 삭제 ····· 50	제1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 50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32조(가지정) ····· 51	제19조(가지정) ····· 51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 51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 52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52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 52	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 52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 54		
제35조(허가사항) ····· 54	제21조(허가절차) ····· 54	제14조(허가신청서) ····· 54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55	제15조 삭제 ····· 55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 57	
제36조(허가기준) ····· 59	제22조(허가서) ····· 59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 59
	제21조의4(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 60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 61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 62		제17조(동물치료소의 지정 · 취소 보고) ····· 62
		제18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 62
		제19조(동물 치료 경비 지급 등) ····· 62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 64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 64
제40조(신고 사항) ····· 65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 65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 65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41조 삭제 ····· 66	제24조 삭제 ····· 66	제22조 삭제 ····· 66
	제25조 삭제 ····· 66	제23조 삭제 ····· 66
	제26조 삭제 ····· 66	제24조 삭제 ····· 66
	제27조 삭제 ····· 66	
제42조(행정명령) ····· 66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 66
제43조(기록의 작성 · 보존) ····· 68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 68
		제27조(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 ····· 69
제44조(정기조사) ····· 69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 69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 69
		제29조(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 ····· 69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 70		
제46조(손실의 보상) ····· 71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 71	
제47조(가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 71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 72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 72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 73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 74		제31조의2(관람료의 감면) ····· 74
제50조 삭제 ····· 75	제30조 삭제 ····· 75	제32조 삭제 ····· 75
	제31조 삭제 ····· 75	
	제32조 삭제 ····· 75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제51조(보조금) ····· 75		제33조(보조금) ····· 75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 76		
제5장 등록문화재		
제53조(문화재의 등록) ····· 76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 76 제35조(문화재의 등록의 신청) ····· 77
제54조(등록문화재의 관리) ····· 78		제36조(등록 사항 등) ····· 78 제37조(기술 지도) ····· 78
제55조(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 79	제33조(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 79	제38조(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 서식) ····· 79
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 80	제33조의2(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 80 제34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 81	제39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 80 제4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통보) · 81
제57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 82	제35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 82	제36조(등록 사항 등) ····· 82 제4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 82
제58조(등록의 말소) ····· 82		
제59조(준용 규정) ····· 83		제41조(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 83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6장 일반동산문화재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 84	제3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 84	제42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 84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 84
제60조의2(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등) ····· 85	제37조(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 ····· 85	제44조 삭제 ····· 85 제45조(감정 요령) ····· 85 제46조 삭제 ····· 85 제47조(수당의 지급) ····· 86 제48조(비문화재의 확인) ····· 86
제61조(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조사) ····· 87	제38조(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방안) ···· 87	제49조(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기록) ····· 87
제7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 87		
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 88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 88		
제65조(처분의 제한) ····· 89		
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 89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 90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68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 · 연구) ····· 90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 90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설치) ····· 91	제38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 91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 92		
제9장 시 · 도지정문화재		
제70조(시 · 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 94	제39조(시 · 도지정문화재 지정의 사전 협의 및 권고) ····· 94	
제71조(시 · 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 95		
제72조(경비부담) ····· 96		제5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 96
제73조(보고 등) ····· 96	제40조(보고) ····· 96	제51조(시 · 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 96
제74조(준용규정) ····· 98		
제10장 문화재매매업 등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 98	제41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 98	제52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 98
제76조(자격 요건) ····· 99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 99
		제54조(박물관 · 미술관의 범위) ····· 100
제77조(결격사유) ····· 100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78조(준수 사항) ····· 101		제55조(문화재 매매 · 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 101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 101		제56조(폐업신고) ····· 101
제80조(허가취소 등) ····· 102		제57조(행정처분기준) ····· 102
제11장 보칙		
제81조(권리 · 의무의 승계) ····· 103		
제82조(권한의 위임 · 위탁) ····· 103	제42조(권한의 위임) ····· 103	제58조 삭제 ····· 103
제8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103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 104		
제84조(국 · 공유재산의 대부 · 사용 등) ····· 104		
제85조(문화재 방재의 날) ····· 104		
제86조(포상금) ····· 105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 105	제61조(포상금의 청구) ····· 105
	제44조(제보의 처리) ····· 106	제59조(제보 조서) ····· 106
	제45조(포상금의 지급) ····· 106	제60조(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 106
	제46조(포상금의 배분) ····· 106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107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 107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 107
제88조(청문) ····· 109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109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 109	제63조(규제의 재검토) ····· 109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12장 벌칙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 110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 111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 111		
제93조(가중죄) ····· 112		
제94조(「형법」의 준용) ····· 113		
제95조(사적 등에의 일수죄) ····· 113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 113		
제97조(미수범 등) ····· 113		
제98조(과실범) ····· 114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 114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 115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 115		
제102조(양벌규정) ····· 117		
제103조(과태료) ····· 117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117	
제10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118		
부 칙 ····· 119	부 칙 ····· 119	부 칙 ····· 119
	시행령 별표 ····· 128	시행규칙 별표 ····· 133

문화재보호법 3단비교표(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문 화 재 보 호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1962. 1.10. 제정 법률 제961호	**1962. 6.29. 제정 각령 제843호**	**1964. 2.15. 제정 문교부령 제135호**
1963. 2. 9. 법률 제1265호	1965.11.10. 대통령령 제2288호	**1969. 6.19. 전문개정 문화공보부령 제6호**
1963.12. 5. 법률 제1462호	1969. 1. 8. 대통령령 제3713호	**1970.12.16. 전문개정 문화공보부령 제19호**
1963.12.16. 법률 제1583호	1970. 8.28. 대통령령 제5306호	1973. 6.28. 문화공보부령 제32호
1965. 6.30. 법률 제1701호	1970.10.10. 대통령령 제5358호	1976. 1.10. 문화공보부령 제52호
1970. 8.10. 법률 제2233호	1973. 3.23. 대통령령 제6589호	1976. 6. 7. 문화공보부령 제55호
1973. 2. 5. 법률 제2468호	1974. 5. 9. 대통령령 제7140호	1979. 3.16. 문화공보부령 제66호
	1975. 7. 2. 대통령령 제7681호	
	1979. 8.29. 대통령령 제9578호	
1982.12.31. 전문개정 법률 제3644호	**1983. 8. 3. 전문개정 대통령령 제11184호**	**1983. 9.19 전문개정 문화공보부령 제77호**
1984.12.31. 법률 제3787호	1985. 5.10. 대통령령 제11696호	1984. 6. 9. 문화공보부령 제80호

1987.11.28. 법률 제3947호	1987. 1.27. 대통령령 제12068호	1984, 8.30. 문화공보부령 제82호
1988.12.26. 법률 제4031호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5호	1985. 5.18. 문화공보부령 제86호
1989.12.30. 법률 제4183호	1991.11. 7. 대통령령 제13500호	1986. 9. 1. 문화공보부령 제92호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87. 3. 2. 문화공보부령 제93호
1995. 1. 5. 법률 제4884호	1994.10. 7. 대통령령 제14399호	1988. 5. 3. 문화공보부령 제96호
1995.12.29. 법률 제5073호	1995. 8.17. 대통령령 제14750호	1988.12.27. 문화공보부령 제98호
1997.12.13 법률 제5453호	1996. 6.29. 대통령령 제15709호	1989. 3.20. 문화공보부령 제100호
1999. 1.29. 법률 제5719호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1989.11.28. 문화공보부령 제102호
1999. 5.24. 법률 제5982호	1998. 2.28. 대통령령 제15690호	1990. 3.29. 문화부령 제2호
2000. 1.12. 법률 제6133호	1999. 5.24. 대통령령 제16347호	1991. 3.15. 문화부령 제3호
2001. 3.28. 법률 제6443호	1999. 6.30. 대통령령 제16413호	1991.11. 7. 문화부령 제9호
2002. 2. 4. 법률 제6656호	2000. 7.10. 대통령령 제16902호	1994.11. 7. 문화체육부령 제17호
2002.12.30. 법률 제6840호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	1996. 7.10. 문화체육부령 제29호
2005. 1.27. 법률 제7365호	2001. 2.24. 대통령령 제17137호	1996.12.30. 문화체육부령 제35호
2005. 3.31. 법률 제7428호	2001. 6.30. 대통령령 제17279호	1999. 7.20. 문화관광부령 제27호
2005.12.23. 법률 제7734호	2003. 4. 4. 대통령령 제17952호	2000. 9. 1. 문화관광부령 제44호

2005.12.29. 법률 제7796호	2003. 6.27. 대통령령 제18026호	2001. 9. 8. 문화관광부령 제53호
2006. 2.21. 법률 제7849호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7.14. 문화관광부령 제77호
2006.10. 4. 법률 제8050호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5. 7.28. 문화관광부령 제121호
2007. 1.26. 법률 제8278호	2005. 7.27. 대통령령 제18976호	2006. 6.23. 문화관광부령 제137호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12.29. 문화관광부령 제153호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15. 대통령령 제19528호	
	2006. 6.29.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12.21. 대통령령 제19764호	
2007. 4.11. 전부개정 법률 제8346호	**2007. 8.17.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29. 전부개정 문화관광부령 제168호**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9.26. 대통령령 제21046호	2007.11.22. 문화관광부령 제173호
2008. 3.28. 법률 제9002호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2008. 6.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호
2008. 6.13. 법률 제9116호	2009. 9.21. 대통령령 제21738호	2008. 9.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호
2008.12.31. 법률 제9313호	2009. 9.2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8.11.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호
2009. 1.30. 법률 제9401호	2009. 9.2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2. 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호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4.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0. 1.27. 대통령령 제22003호	2009. 5.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호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2009.11.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호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0호	
2010. 2. 4. 전부개정 법률 제10000호	**2010.12.29.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560호**	**2011. 2.12. 전부개정 문화관광부령 제76호**
2011. 4. 6. 법률 제10562호	2012. 6.19. 대통령령 제23862호	2012. 6.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9호
2011. 7.14. 법률 제10829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1.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5호
2011. 8. 4. 법률 제11037호	2014. 8.27. 대통령령 제25576호	2013.12.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3호
2011. 9.16. 법률 제11053호	2014.12.23. 대통령령 제25873호	2014.12.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2호
2012. 1.26. 법률 제11228호	2015.10. 6.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 1.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0호
2014. 1.28. 법률 제12352호		2015.12.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2호
2014. 5.28. 법률 제12692호		2016. 2.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5. 3.27. 법률 제13249호		
2016. 2. 3. 법률 제13964호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화재보호법」및「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제2조(정의)**「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연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절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切土), 복토(覆土), 굴착, 골재 채취,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② 지정문화재(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수리·실측·설계·감리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제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의3.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3조(문화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3.〉 1.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관리단체 3.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4. 그 밖에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3.27.>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7.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9.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⑤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문화재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14〉 ⑨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전문위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14〉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4.5.28.〉 ③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신설 2014.5.28.〉 1.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2. 문화재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4.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문화재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14.5.28.〉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5.28.〉 ⑥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한다.〈개정 2014.8.27.〉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27.〉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수 있다. 〈개정 2014.5.28.〉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제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문화재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 경위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재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1. 조사자, 조사경과,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2. 조사한 문화재의 상세한 현재 상태 3. 조사한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재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문화재 조사·발굴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재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문화재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문화재청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7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제2조(검토의견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9.]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1.28.〉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경우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③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이 제21조의2제2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2. 제1호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행위기준안 및 이를 작성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3. 제2호의 행위기준안에 대한 지역 주민 및 관리단체의 의견 4. 그 밖에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⑥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개정 2014.1.28.〉 ⑦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조교수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관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위기준의 고시일부터 10년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지형의 변화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행위기준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9.]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⑦ 문화재청장은 인허가 행정기관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3.]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8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2.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화재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 활동 2. 화재 시 신고요령 3. 화재 시 문화재의 이동·분산대피 등 대응요령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지정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 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은 법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연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중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2.1.26〉 ⑦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6〉 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1.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		보유하고 있는 시설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법 제1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에 설치하는 표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1.29.〉 [본조신설 2012.6.21]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설치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수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교육이나 연구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적증명서나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 변경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변경,		**제4조(문화재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수리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2.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실적저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지급 신청,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을 명령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2.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3. 신체적 · 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수학 또는 연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본인의 성명 ·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③ 장학금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사람은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안에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 법 제1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학업 및 연구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면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가 소멸되면 장학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7조 삭제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① 국가는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문화재분야 협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 삭제 〈2015.3.27.〉		
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 국가는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문화재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제9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한 문화재 공동조사·연구 및 수리 2. 남북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3. 문화재분야 관계 전문가 인적 교류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에 북한 문화재 등재 지원 5. 그 밖에 남북한 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안에 사업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4.6〉 ②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제10조(세계유산등의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점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 ①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 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문화재를 유치하면 그 외국문화재를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재와 국유 외의 지정문화재 및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② 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화(戰禍)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지원 요청) 문화재청장이나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21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6.〉	**제8조(조사보고서)** 영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건조물이 아닌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는 문화재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2016.2.29.〉 1. 삭제 〈2016.2.29.〉 2. 삭제 〈2016.2.29.〉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으면 지체 없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 5. 문화재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문화재 사진자료 7.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문화재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전문개정 2016.2.29.]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2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삭제 〈2015.3.27.〉 ③ 삭제 〈2015.3.27.〉 ④ 삭제 〈2015.3.27.〉 ⑤ 삭제 〈2015.3.27.〉 [제목개정 2015.3.27.]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삭제** 〈2015.10.6.〉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 ·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시 ·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재의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⑥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재나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문화재청장이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2015.3.27.〉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15.3.27.]	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삭제 〈2015.10.6.〉 5. 지정의 이유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제29조(지정서의 교부)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나 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5.3.27.>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 부록을 별도로 만들어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6.2.29.〉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5.3.27.〉 [제목개정 2015.3.27.]		
제31조(지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 ·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3.27.〉 ③ 삭제 〈2015.3.27.〉 ④ 문화재청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재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	**제18조 삭제** 〈2015.10.6.〉	**제1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해제 2. 삭제 〈2016.2.29.〉 3. 삭제 〈2016.2.29.〉 4.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그 범위의 조정 ② 삭제 〈2016.2.29.〉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⑥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28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5.3.27.〉		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32조(가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부터 6개	**제19조(가지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월 이내에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통지와 가지정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14.1.28.〉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재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를 특별히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	**제21조(허가절차)** ①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5.10.6.〉	**제14조(허가신청서)**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 영인 또는 촬영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 · 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 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6.〉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2. 국유인 문화재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한정한다)의 현상변경 행위 3.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 · 채취 · 사육하거나 표본 · 박제 · 매장 · 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 · 관로 · 전선 · 공작물 ·	④ 법 제35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2015.1.29.〉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 절토, 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질 · 화학물질 ·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 ·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 · 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2.23.]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또는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석(標石),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바. 보호책(保護柵)을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관리 아. 학술·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삽수: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4.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6. 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2.23.]	
제36조(허가기준) ①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제22조(허가서)** 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3. 문화재기본계획과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②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4.12.23.〉 **제21조의4(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④ 제3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사람 [본조신설 2014.12.23.]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문화재청장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단서, 제3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치료"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③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천연기념물 동물의 조난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		**제17조(동물치료소의 지정·취소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하였을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동물 치료 경비 지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수의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27호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와 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치료 경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동물치		서식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수의사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를 접수하면 치료 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료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 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의 반출 허가와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제출기한은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35조제1항제4호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 2014.12.23.〉 ②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4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⑦ 법 제40조제1항제9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9.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 삭제 〈2015.3.27.〉	**제24조 삭제** 〈2015.10.6.〉 **제25조 삭제** 〈2015.10.6.〉 **제26조 삭제** 〈2015.10.6.〉 **제27조 삭제** 〈2015.10.6.〉	**제22조 삭제** 〈2016.2.29.〉 **제23조 삭제** 〈2016.2.29.〉 **제24조 삭제** 〈2016.2.29.〉
제42조(행정명령)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치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기록의 작성 · 보존)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 · 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 · 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27조(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2015.12.23.〉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정문화재 4. 천연기념물 및 명승 5.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국가지정문화재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2.29.〉 **제29조(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법 제44조제6항에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삭제 〈2015.3.27.〉 4. 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 5.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6.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손실의 보상)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44조제4항(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46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가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가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한다),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재 수리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문화재 보호 · 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 ·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시 · 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9.〉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제31조의2(관람료의 감면)**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3.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로 한정한다)의 주민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50조 삭제 〈2015.3.27.〉	**제30조 삭제** 〈2015.10.6.〉 **제31조 삭제** 〈2015.10.6.〉 **제32조 삭제** 〈2015.10.6.〉	**제32조 삭제** 〈2016.2.29.〉
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삭제 〈2015.3.27.〉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보조금)**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7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68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보호·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등록문화재		
제53조(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35조(문화재의 등록의 신청)**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단체의 장이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대상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서 2. 대상 문화재의 사진·도면 및 문헌 자료 사본 3. 대상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재 수리내역서(대상 문화재의 수리 내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4조(등록문화재의 관리) 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제36조(등록 사항 등)** 문화재청장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제37조(기술 지도)** ① 법 제54조제3항에서"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등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록문화재의 관리, 보수·복원, 이를 위한 실측·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71호서식의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9.〉
제55조(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제33조(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제1호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2.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3. 법 제5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 소재지 변경 및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4. 법 제55조제6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56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5. 법 제55조제7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착수 또는 완료 신고서: 별지 제35호서식 6. 법 제55조제8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반입 신고서: 별지 제36호서식
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33조의2(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그 외관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	**제39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삭제 <2015.1.29.> ②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③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3.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2.23.] **제34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문화재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23.〉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23.〉	**제4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등록문화재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9.〉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57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허가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등록 사항 등)** 문화재청장과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 · 관리 및 변경사항,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제4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 ·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등록문화재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9.〉
제58조(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9조(준용 규정) ① 등록문화재의 등록 · 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 · 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 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등록문화재의 관람료 징수,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 ·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 제45조, 제49조, 제51조제1항제1호 · 제3호 및 제2항 · 제3항,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		**제41조(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본다. 〈개정 2014.1.28.〉		
제6장 일반동산문화재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2.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제3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는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典籍), 고문서, 서간(書簡), 서각(書刻),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영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30.〉 ④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76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0조의2(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불법반출 방지 및 국외 반출 동산에 대한 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등에 문화재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7.]	**제37조(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면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6.〉 ②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재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신설 2015.10.6.〉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예연구관 또는 가군 전문경력관 3.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문화재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	**제44조 삭제**〈2016.2.29.〉 **제45조(감정 요령)**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감정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2.29.〉 1. 감정이 의뢰된 동산이 제42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것 2.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재감정위원(이하 "문화재감정위원"이라 한다)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감정·평가할 것 3. 단독으로 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문화재감정위원이 같은 장소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화상감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각각 다른 장소에서 공동으로 감정할 것 **제46조 삭제**〈2016.2.29.〉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6.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정위원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1.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공항 2.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3.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의4의 남북출입사무소 ④ 제1항에 따른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6.〉 [제목개정 2015.10.6.]	**제47조(수당의 지급)** 문화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문화재감정위원이 영 제37조에 따라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비문화재의 확인)**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78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78호서식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비문화재 확인표지를 해당 확인 대상물에 붙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79호의2서식의 문화재감정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61조(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재의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방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동산문화재의 현황 2. 일반동산문화재의 보관 경위 및 관리·수리 이력 3. 보존·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문화재와 그 조치 방안(조치할 내용,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계획 및 학술연구 등 활용계획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재가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行政財産)인 경우 또는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재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국유문화재를 문화재청장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 문화재청장이 제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문화재의 관리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에 관하여 제40조 · 제42조 · 제45조 및 제4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란 그 문화재의 관리청을 말한다. **제65조(처분의 제한)**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문화재(그 부지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관리 ·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8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연구)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6.2.3.〉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2.3.〉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청장의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38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환수·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환수·활용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9]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①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국외문화재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외문화재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외문화재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국외문화재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보호·활용에 관한 연구 3. 국외소재문화재의 취득 및 보전·관리 4.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5.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6.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7.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8. 국외소재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9.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그 밖에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⑦ 국외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6]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9장 시·도지정문화재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제39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 ① 삭제 ② 삭제 〈2015.10.6.〉 ③ 문화재청장이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삭제 〈2015.3.27.〉		
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준용한다.
제73조(보고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작자, 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마.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 바.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사.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3.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수량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라. 변경 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마. 사진 및 도면 4.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다.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라.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 사진 및 도면
제74조(준용규정) ①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②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8조,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3.27.〉		
제10장 문화재매매업 등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제41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로	**제52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7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서 제작된 지 50년 이상된 것에 대하여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③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④ 제3항에 따라 실태를 신고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9.〉 ③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실태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제76조(자격 요건)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 · 고고학 · 인류학 · 미술사학 · 민속학 · 서지학 · 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 · 미술관의 범위, 전공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1.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2. 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과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54조(박물관 · 미술관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제7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과 「형법」 제347조 또는 제362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78조(준수 사항) ①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제1항에 따른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에 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8.〉		**제55조(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 법 제78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문화재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9.〉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5.1.29.〉 ④ 문화재매매업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재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재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9.〉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제7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		**제56조(폐업신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전문개정 2015.1.29.]
제80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0조·제92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11장 보칙		
제81조(권리 · 의무의 승계)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 · 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前所有者)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34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 · 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권한의 위임 ·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재의 보호 · 보존 · 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2.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지 [전문개정 2014.12.23.]	**제58조 삭제** 〈2015.1.29.〉
제8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4.5.28.]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삭제 〈2014.1.28.〉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5조(문화재 방재의 날)** ①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③ 문화재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6조(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범위, 제보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① 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검사 2.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3.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5. 「관세법」 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	**제61조(포상금의 청구)**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 신청 절차와 지급기준 등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포상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44조(제보의 처리) 법 제86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제보 조서)** 영 제44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 조서는 별지 제89호 서식에 따른다.
	제45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제60조(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등급	포상금액	
	제보한 자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1등급	2,000만원	400만원
2등급	1,500만원	300만원
3등급	1,000만원	200만원
4등급	500만원	100만원
5등급	250만원	5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포상금의 배분) 제4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6.]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제25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③ 제35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3.〉 1.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그 보호물의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87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재가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재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조 · 제2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 녹지의 점용 및 사용 허가 ④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 ·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문화재청장이나 시 ·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88조(청문)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 제39조, 제56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 취소 2. 제38조제5항에 따른 동물치료소의 지정 취소 3. 제80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1.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1의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1의3. 제3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조사의견을 제출하는 자 2.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 2015년 1월 1일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15.12.23.〉 1. 제20조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 등: 2015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 제출 등: 2015년 1월 1일 3. 제32조에 따른 공개행사계획서 등: 2015년 1월 1일 4. 제48조에 따른 비문화재의 확인: 2015년 1월 1일 4의2.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 2016년 1월 1일 4의3. 제5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3. 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8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2. 제39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사전 협의 및 권고: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12.23.]	2016년 1월 1일 5. 제5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등: 2015년 1월 1일 6. 제57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12.30.]
제12장 벌칙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39조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또는 반출하는 정(情)을 알고 해당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 · 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죄를 범하면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 · 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제95조(사적 등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겨 제95조에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미수범 등)** ①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 제95조 및 제9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②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 제95조 및 제9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1항제4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3.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재가 자기 소유인 자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이나 제42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천연기념물(시·도지정문화재 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지시에 불응하는 자 2. 제34조제5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 허가 없이 제35조제1항제3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4. 제44조제4항 본문(제45조제2항과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방해한 자 5.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6.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8. 제4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10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또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4.5.28.〉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82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40조제1항제5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40조제1항제7호나 같은 조 제3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제10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부칙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98조 및 제10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92조제3항제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는 종전의 제34조제3호로 본다. ②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98조제1항 중 제95조 또는 제96조는 종전의 제107조 또는 제108조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5조 또는 제96조는 종전의 제104조제3항, 제107조 또는 제108조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104조제3항에 따른 죄의 경우 해당 문화재 몰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102조 중 위반행위에 관한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또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요민속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자료는 이 법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수 교육 조교 선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 받은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안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문화재보호법」제35조	**부칙 〈제76호,20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9호,2012.6.21〉**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2013.1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제4조(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고시된 문화재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7조 및 제9조”를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②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47조제2항”을 “제53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②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 로,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③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 ④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4조”로 한다. ⑤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로 한다. ⑥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⑦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같은 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④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⑤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3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9조”로 한다. 제54조제7호 및 제55조제5호 중 “제9조”를 각각 “제27조”로 한다.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9조”를 “제27조” 로 한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제34조제1호·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34조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로, “제75조”를 “제74조”로 한다. ⑨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⑧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 를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로 한다.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 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⑪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제34조제1호 · 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34조제1호 · 제3호" 를 "제35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4호"로, "같은 법 제70조 단서"를 "같은 법 제66조 단서"로 한다.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99의 근거법률란 중 "제9조 및 제75조"를 "제27조 및 제74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00의 근거법률란 중 "제14조 및 제75조"를 "제32조 및 제74조" 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01의 근거법률란 중 "제47조"를 "제53조"로 한다. ⑫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제6조"를 "제24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⑫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1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2조"로 한다.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으로 한다. 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31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 를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로 한다.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 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562호,2011.4.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62호,2012.6.19〉**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9호,2011.7.1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037호,2011.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25576호,2014.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8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⑨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053호,2011.9.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8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재청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352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8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873호,2014.12.23〉**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15.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32호,201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부칙 〈제12692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본다. 이 경우 한국문화재재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한국문화재재단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문화재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한국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2015.10.6, 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 2016.2.29, 일부개정]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②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부칙 〈제13249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75호,2015.1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상변경 허가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을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거나 그 체포에 공로가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7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 의뢰 및 회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6조에 따라 행하여진 감정 의뢰에 대한 감정 결과 회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96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6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5.10.6.>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문화재의 종류	지 정 기 준
보물	1. 건조물(建造物)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堂塔), 궁전, 성문(城門), 전랑(前廊), 사우(祠宇), 서원(書院), 누정(樓亭), 향교, 관아(官衙), 객사(客舍)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 석탑, 전탑(塼塔), 승탑(僧塔) 및 석종(石鍾), 비갈(碑碣), 석등(石燈), 석교(石橋), 계단(戒壇),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첨성대, 당간지주, 석표(石標), 석정(石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다. 분묘(墳墓) 분묘 등의 유구(遺構) 또는 건조물, 부속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라. 조적조(組積造)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 청사(廳舍), 학교, 병원, 역사(驛舍), 성당, 교회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서적·문서 가. 전적류 1) 사본류(寫本類): 한글서적, 한자서적, 저술고본(著述古本),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古寫本)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2) 판본류: 판본(版本) 또는 판목(版木)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큰 것 3) 활자본류(活字本類):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나. 서적류 사경(寫經), 어필(御筆), 명가필적(名家筆跡), 고필(古筆), 묵적(墨跡), 현판(懸板), 주련(柱聯)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조각 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우리나라의 회화사적으로나 조각사적으로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나 공예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예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패총(貝塚) 또는 사지(寺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전세품(傳世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라.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6. 무구(武具) 가. 우리나라 전사상(戰史上)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나. 역사적인 명장(名將)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적으로 그 의의가 큰 것
국보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의장(製作意匠)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製材)·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사적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 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 다.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라.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다. 역사·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마.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명승	1.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고원·평원·화산·하천·해안·하안(河岸)·섬 등 2. 동물·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가.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나.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3.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가.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나. 정자·누(樓)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도시·전통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4.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해협, 곶, 급류, 심연(深淵), 폭포, 호수와 늪, 사구(砂丘), 하천의 발원지, 동천(洞天), 대(臺), 바위, 동굴 등 5.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가. 정원, 원림(園林),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나. 역사·문학·구전(口傳)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6.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적 또는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천연 기념물	1. 동물 가.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번식지 나.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폭포·온천·하구(河口)·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生長)하는 특유한 동물 또는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지 또는 도래지 다.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 문화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진귀한 동물 및 그 서식지·번식지 라.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畜養動物)과 그 산지 마. 한국 특유의 과학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물자원·표본 및 자료 바. 분포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고유의 동물이나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지 등 2. 식물 가. 한국 자생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생육지(生育地) 나. 석회암지대·사구(砂丘)·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수·늪·폭포·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식물군·식물군락 또는 숲 다. 문화·민속·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생육지·자생지 라.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 마. 문화·과학·경관·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 명목(名木), 노거수(老巨樹), 기형목(畸型木) 바. 대표적 원시림·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사. 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아.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에 관련된 유용식물(有用植物) 또는 생육지 자.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3. 지질·광물·지형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1)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2)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3)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露頭)와 그 분포지 4)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나.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1)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그 산지 2) 지질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과 그 산지 3) 신속(新屬) 또는 신종(新種)으로 보고된 화석 중 보존 가치가 있는 화석의 모식표본(模式標本)과 그 산지 4)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 산지 또는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화석과 그 산지

	다.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퇴적구조와 암석 1)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2) 퇴적구조: 연흔(漣痕),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등 3)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베개 용암(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라.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1) 구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단구, 하안단구, 폭포 등 2)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단성화산체(單成火山體), 화구(火口),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화산동굴, 환상 복합암체 등 3)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사구, 해빈(海濱), 갯벌, 육계도,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카르스트 지형, 석회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선상지(扇狀地), 삼각주, 사주(砂洲) 등 4)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등 5) 그 밖에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마.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지질 현상 1) 얼음골, 풍혈 2) 샘: 온천, 냉천, 광천 3) 특이한 해양 현상 등 4. 천연보호구역 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나.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다.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5. 자연현상 관상적·과학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현저한 것
중요 민속문화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가.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어렵구(漁獵具)·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 배·수레, 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贈答用具), 경방용구(警防用具), 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曆類)·점복(占卜)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원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재를 수집·정리한 것 중 그 목적·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문화재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재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民家群)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지 정 기 준
1. 국보·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구역	가. 해당 문화재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까지(해당 문화재가 사찰, 사지, 서원, 향교, 관아, 객사, 전랑지 등 문화 유적지와 연결될 경우 그 유적지 외곽 경계에서 10미터부터 100미터까지) 나. 그 밖에 해당 문화재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사적의 보호구역	가. 선사시대 유적 1)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 산포구역(散布區域) 2)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1) 궁터: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봉수대, 관아, 병영 등: 해당 사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4) 전적지: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다.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1) 역사(驛舍), 가마터: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교량, 제방, 원지, 우물, 수중유적 등: 역사문화환경적으로 해당 사적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라.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사적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마.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바.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사.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명승의 보호구역	경승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가. 동물·지질광물·천연보호구역·자연현상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나.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
5. 보호물	가. 지상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보호책·담장 또는 그 밖에 해당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동종(銅鍾)·석비(石碑)·불상 등은 종각(鍾閣)·비각(碑閣)·불각(佛閣) 다. 그 밖의 문화재는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6.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가. 보호물이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보호책·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별표 3] <개정 2014.12.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103조제5항	10	10	10
다.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제4항제1호	10	100	200
라. 법 제40조제1항제5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제2항	10	100	200
마. 법 제40조제1항제6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제1항제2호	300	400	500
바. 법 제40조제1항제7호나 같은 조 제3항(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제3항	100	200	300
사. 법 제40조제1항제8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제4항제1호	50	100	200
아. 법 제40조제1항제9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제1항제2호	10	50	100
자. 법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제4항제2호	50	100	200
차. 법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제1항제3호	100	300	500
카.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제1항제4호	500	500	500
타.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제4항제3호	50	100	200
파.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제1항제5호			
1)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2) 문화재 매매·교환 등의 거래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10	100	300
3)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지 않은 경우		10	100	300
하. 법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제1항제6호	50	50	50
거. 법 제82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03조제1항제7호	200	300	400

[별표 1] <신설 2015.1.2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 (제2조의2제1항제1호 관련)

항 목		내 용
문화재 정 보	기본사항	종별, 명칭,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사진, 도면, 고문헌, 고지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연혁, 구조, 형식, 규모, 식생, 현상 등
주변 현황	개요	인문환경, 지역과 문화재와의 관계 등
	입지환경	지형의 고도 및 경사도 분석, 식생, 도로, 시설물 현황, 수계현황, 수변여건, 입지환경의 변천 등
	정비계획	문제점, 도시계획의 변경 가능성 및 변경 내용,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등
	동식물 생태	이동경로, 수림대, 서식지 등
	토지이용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 및 건축물 GIS자료 등
	장애요소	문화재 보존관리 장애요소
관련 법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자치법규	관련 자치법규
	관련사례	유사한 관련 사례 및 계획
	문제점	법규 간 충돌문제 및 해결방안
기타 사항	현상변경 사항	기존 현상변경허가 및 불허사항
	주민의견 등	문화재와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 내용 등
	기타	행위기준안 작성과 관련한 참고사항

[별표 1의2] 〈개정 2015.1.29.〉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제3조의2제2항 관련)

1.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

가.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1)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 또는 지역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표지판

금 연 구 역 (시설 또는 지역 전체)

(예시)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나) 스티커(예시)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사선 및 글씨(“금연” 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2)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

1) 금연구역

가) 금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① 표지판

금 연 구 역

(예시)

② 스티커(예시)

나)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사선 및 글씨(“금연” 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다) 시설 또는 지역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금연구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시설 또는 지역의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마)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

가) 흡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흡 연 구 역

(예시)

나)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그 글씨는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 표지판은 흡연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라)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 및 설치방법

가.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제42조 관련)

보존 대상			제외 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세분류)	
전통회화	산수화	산수화 등	○ 파손 및 훼손이 심하고 보존 상태가 나쁘거나 과도하게 보수되어(먹이나 채색을 넓게 덧칠한 경우 등) 작품의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 ○ 다작(多作)으로 인해 동일한 성격과 가치를 가진 작품이 많이 남아 있어서 대체될 수 있는 것 ○ 작가 또는 제작연대가 불분명하고 제작기법이 졸렬하며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것 ○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인물화	초상화, 고사인물화, 도석인물화 등	
	풍속화	풍속화 등	
	기록화	계회도, 행렬도, 순절도, 궁궐도, 의궤도, 하례도, 순력도, 행사도, 수연도 등	
	영모·화조화	영모화(동물화), 화조화, 초충·어해·기명절지도 등	
	사군자	매도, 난도, 국도, 죽도 등	
	민화	민화, 문각도 등	
근대회화	서양화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동양화	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사군자화, 영모·화조화, 민화 등	
	기타	사진·삽도 등	
불교회화	괘불화	석가불도(영산회도), 미륵불도, 노사나불도, 삼세불도, 삼신불도, 사불회도, 오불회도 등	
	탱화	여래도(석가불도, 영산회도, 아미타불회도, 아미타래영도, 관경변상도, 염불왕생첩경도, 미륵하생경변상도, 약사불회도, 비로자나불회도, 삼세불회도, 삼신불회도, 53불도, 천불도 등), 보살도(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삼장보살도 등), 나한·조사도(16·500나한도, 조사도, 국사도, 영정 등), 신중도(제석·천룡도, 사천왕도, 금강도, 산신도 등), 기타(감로도, 시왕도, 현왕도, 칠성도, 조왕도 등)	
	경전화	사경화, 판경화 등	
	벽화	석벽화, 토벽화, 판벽화 등	
종교회화	유교회화	유교회화	
	무속화	무속화	
일반조각	암벽조각	암각화, 각석 등	○ 얼굴, 손, 다리 등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는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파손·결실되었거나 보수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명문이나 출토지가 분명한 것은 제외) ○ 다량 제작으로 동일한 것의 수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대체될 수 있는 것 ○ 조형성(造形性)이나 제작기법이 졸렬하고 형태, 양식, 재료 등의 특징 또는 지역적인 특색 등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것 ○ 조각의 단편(명문이 있는 것 제외) ○ 근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조형, 조각기법 등에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중요작가나 유파(流波)를 대표하는 작품이나 조선미술전람회 출품작은 제외] ○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토우	인물상, 동물상, 생활용구(가옥, 배 등)	
	십이지상	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상	
	능묘조각	석인(문인상, 무인상), 석수(사자, 호랑이, 양, 말, 기린, 코끼리, 해태 등)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돌하르방 등	
불교조각	여래	석가불, 아미타불, 미륵불, 약사불, 비로자나불, 탄생불 등	
	보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일광보살, 월광보살 등	
	천부	사천왕, 인왕, 범천, 제석천, 팔부중, 비천, 가릉빈가 등	
	나한	나한상, 유마거사, 오백나한, 십육나한 등	
	명왕	명왕상, 공작명왕 등	
	기타	성문, 선재동자, 동자상 등	
근대조각	인물조각	두상, 흉상, 전신상 등	
	종교조각	불교조각, 신상(산신상, 성모상), 성인상 등	
석조물	탑	석탑, 전탑, 모전석탑, 다보탑, 보협인탑, 사리탑, 4사각석탑, 청석탑, 오륜탑 등	○ 파손이 심하거나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결실 또는 보수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명문이나 출토지가 분명한 것은 제외) ○ 다량 제작으로 수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시대양식을 반영하는 것은 제외)
	부도	팔각원당형부도, 석종형부도 등	
	석등	방형석등, 육각석등, 팔각석등 등	
	당간지주	당간, 지주 등	

	석비	이수, 비신, 비좌, 귀부 등	○제작기법이 졸렬하고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 ○석조의 단편(명문이 있는 것 제외)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석조	장방형석조, 원형석조 등	
	기타	신도비, 묘갈, 묘표, 혼유석, 장명등, 망주석, 향로석, 상석과 고석, 입석(선돌), 남녀근석, 제단(성황단), 석간(돌기둥) 등	
일반공예	목공예	가구류(장, 농, 반닫이, 서안, 탁자, 문갑, 경대, 고비, 찬장, 반, 돈궤, 가께수리, 경상, 관대함, 반짇고리, 벼루집, 앞닫이, 붓통, 문서함, 평상, 뒤주, 교의, 주독, 제탁, 향탁 등)	○장식·조각의 손상, 문양의 마모, 색감의 변질, 표면의 부식·박락 등 훼손·파손이 심하거나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결실 또는 대용재(代用財)로 교체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제작기법 등이 특이한 것은 제외) ○다수가 현전하는 것이거나 명문 또는 특이한 문양·기법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미술공예적 가치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것[중요 인물의 묘장 출토품, 전세품(傳世品) 및 복장유물(腹藏遺物)은 제외] ○근대에 대량 생산된 것(조선미술전람회 당선작, 중요무형문화재의 초기작은 제외)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칠공예	칠공예품(상, 상자, 궤, 함, 그릇, 붓통 등), 가구류, 기명류(함지박, 발우, 쟁반, 그릇, 완, 수저 등)	
	화각공예	가구류(장, 함, 궤 등), 침선도구류(자, 실패), 기타(선추, 붓 등)	
	죽공예	채상, 낙죽, 붓통 등	
	초고공예	화문석 등	
	금속공예	청동용구(시저, 병, 대접, 접시, 완, 반, 합 등)	
		장신구(관모, 요대, 대구,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뒤꽂이, 비녀, 향갑, 떨잠, 농낫, 노리개 등)	
		생활용구(촛대, 거울, 향로, 화로 등)	
		무속구(거울, 방울 등)	
		마구(말안장, 방울, 행엽, 등자 등)	
		무구(검, 창, 방패, 총통, 완구 등)	
	옥석공예	옥공예(패식, 옥로, 장신구, 향로, 인장 등)	
		석공예(화로, 연초함, 촛대 등)	
	복식공예	의복, 제화, 안경 등	
		관모 등	
	근대공예	기독교공예	
		근대공예	
불교공예	의식법구	범종, 금고, 운판, 바라, 법고, 금강령, 금강저, 경자, 목어 등	
	공양구	향로, 정병, 화병, 촛대, 등, 다기, 마지, 발우 등	
	장엄구	불단, 닫집, 불감, 목패, 금속탑, 보당, 불번, 불연, 전패 등	
	사리장치	사리호(병), 사리함 등	
	복장품	후령통 등	
	기타	석장, 업경대, 괘불함, 다라니주머니, 청동시루 등	
유교공예	제례용구	제기, 향로, 명기 등	
도자공예	토·도기	토기(호, 발, 완, 병, 시루, 기대, 고배, 벼루, 잔, 주자, 합, 상형 등), 와전류	○명문이나 독특한 문양이 없고, 심하게 파손되어 복원이 어렵거나 대용재를 절반 이상 사용하여 복원한 것 ○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명문이나 문양은 없지만 출토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제외) ○도자기편(독특한 문양이나 명문이 있는 것 또는 출토지를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다량 수집한 것은 제외) ○원형을 상실한 재번조품(再燔造品)(산화가 심하지 않아 원형을 복원한 것은 제외)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도기(호, 병, 시루, 두무, 단지, 소줏고리 등)	
		녹유(잔탁, 호, 발, 병, 합 등)	
	자기	청자(완, 대접, 접시, 호, 병, 주자, 합, 잔탁, 베개, 의자, 연적, 필가, 장구, 타일, 상형, 향로, 불상, 승상, 번기 등)	
		백자(완, 발, 대접, 접시, 호, 병, 주자, 합, 잔탁, 반, 묵호, 연적, 필가, 필세, 필통, 남뱃내, 벽살, 넝기, 묘지, 장군, 숟가락, 양념단지, 촛대, 베갯모, 인장, 타구, 장기, 해시계, 추, 고드랫돌, 애자, 문진 등)	
		분청사기(발, 대접, 접시, 호, 병, 상굳, 반, 합, 벼루, 묘지 등)	
		석간주(호, 병 등)	
		흑유자(호, 병, 주자, 푿주 등)	
		잡유자(호, 병, 주자 등)	
전적류	필사본	고본(친필본 등)	○훼손 또는 낙질도(洛帙度)가

		사경(묵서, 금니, 은니 등)	심하여 원형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유일고본(唯一稿本) 및 일기, 등록류와 명인의 지기(識記)나 장서인(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일기류(일기 등)	
		등록류(등록 등)	
		사본류	○ 필사본의 원본이 현존하는 전적의 복사본 중 그 복사자가 역사상 명인이 아닌 것
	목판본	대장경(초조, 재조 등), 교장	
		간경도감본(한문본, 언해본 등)	○ 국내 소장의 완본이 공공기관 등에 있어 재확보가 가능하고 현존본이 많이 전래되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다만, 명인의 지기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제외)
		관판본, 사찰본, 서원본, 사간본, 방각본 등	
	활자본	목활자본	○ 세작된 지 50년이 안 된 복제본(영인본·복사본) 또는 현대작
		금속활자본	
		기타 활자본	
고문서류	국왕문서	책류(옥책, 죽책, 시책, 애책 등)	
		교령류(교서, 유서, 유지, 왕지, 교지, 교첩, 녹패, 녹권, 공신회맹문, 비답, 봉서, 은사장, 윤음 등)	
		조칙류(조, 칙, 고명 등)	
		표전류(전문, 표문 등)	
	왕실문서	궁방류(내지, 자지, 영지, 영서, 수본, 하답, 도서 패자, 도장허급문 등)	
	관부문서	소차장계류(소초, 차자, 상소, 계본, 계목, 장계, 서계, 초고 등)	
		첩관통보류(차첩, 관문, 첩보, 첩정, 해유문서, 서목, 수본, 고목, 감결, 전령, 망기 등)	
		증빙류[표문, 노문(路文), 입안, 입지, 제음, 완문, 완의, 입의, 자문, 조흘첩, 절목 등]	
		단자류(사은단자, 진상단자, 표폄단자, 서경단자, 시호망단자, 문안물종단자 등)	
		호적류(준호구, 호구단자, 호적, 민적부 등)	
	사인문서	소지류(소지, 상서, 의송, 등장, 상언, 발괄, 단자, 청원서 등)	
		시권류(시권, 방목 등)	
		문기류(입후성문, 노비, 토지, 가옥, 어장, 염분, 공인, 기인, 경주인, 도장, 전당문기, 패지, 수표, 수기 등)	
		분재기류(분금문기, 허여문기, 별급문기, 화회문기, 유서 등)	
		서간·통고류(혼서, 통문, 히문, 간찰 등)	
		치부·기록류(추수기, 도조기, 불망기 등)	
		시문류(제문, 만사, 축문 등)	
	사찰문서	사적기, 중수기, 복장기, 모연문, 권선문, 상량문, 불양안 등	
	서원·향교문서	좌목(선생안, 청금안, 재임안, 접사안 등)	
		소지류(소지, 등장 등)	
		증빙류(절목, 입의 등)	
		기문류(의례, 홀기, 제문, 축문, 상량문 등)	
		통보류(통문, 회문 등)	
		치부·기록류(전답안, 노비안 등)	
서간류	서예	서예(왕실, 일반 등)	○ 훼손이 심하여 원형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 ○ 발신자나 수신자 및 내용 면에서 자료적 가치가 적은 일반인의 서간 ○ 다시 고쳐 써서 서적의 자양(字樣)에 오손이 심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것 ○ 친필로 쓰이지 않고 모서된 것 ○ 필자 또는 유래를 알 수 없고 서예사적 가치가 없는 현판류 또는 주련류
	간독류	간독(간찰, 필첩, 유묵 등)	
	시고류	시고(별시, 하시 등)	
	탁본류	탁본 등	

			○인기나 수결이 없는 간찰류·단자류 또는 수록류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고문서류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복제본(영인본·복사본) 또는 현대작
서각류	목판각류	판목류(책판, 경판 등)	○제작자나 소유자 등의 유래가 불분명하고 자료나 각자 기술이 졸렬하여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복제품 또는 현대작
		현판류(편액, 현판, 주련 등)	
	금석각류	비(기념비, 신도비, 선정비, 충효비, 묘비, 사적비, 탑비, 부도비, 비갈, 징생표 등)	
		지석(묘지석 등)	
		석각류	
		명문류	
	인장류	어보류, 관인, 사인 등	
근대매체	시청각류	녹음, 사진, 필름, 영상기록물 등	○파손·부식·훼손이 심하여 판독할 수 없는 것 ○수록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멸실되어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종류의 매체가 현존하는 것이 많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고고자료	선사유물	석기(타제석기, 마제석기 등)	○심하게 부식·훼손되어 학술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
		골각기 등	
자연사자료	자연과학유물	인골류	○심하게 부식·훼손되어 역사적·학술적·과학적·심미적·관상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
		생물자료(동물자료, 식물자료 등)	
		무생물자료(지질자료, 광물자료 등)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생업기술용구	농경(농기구류, 경작기류 등)	○다량 제작되고 양식상·기술상 특색이 없는 일반화된 일회용 잡기로서 학술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 ○파손·부식·훼손되어 원형을 잃었으며 수리·복원이 불가능하여 민속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없는 것 ○근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흔하거나 일본화 또는 서구화된 것(중요무형문화재가 제작, 사용하던 근대기의 유물은 제외)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 용구
		수렵(수렵 등)	
		어로(어로 등)	
	천문지리기구	천문(천문, 시간 등)	
		기상(기상 등)	
		지리(지리, 풍수 등)	
	계측교역기술용구	계산용구 등	
		도량형(계량용구, 계측용구, 화폐·우표 등)	
		교역용구 등	
	이동운송	이동용구 등	
	기술용구	운송용구 등	
	공예기술용구	직조용구 등	
		초고공예용구 등	
		도자공예용구 등	
		목공용구 등	
		칠공용구 등	
		금속공예용구 등	
		의료(의약, 의료기 등)	
	음식제조용구	음식류	
		주류	
	인쇄기술용구	인쇄기기(활자, 활판 등)	
		인쇄용구 등	
	놀이·유희용구	악기(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놀이도구 등	
	무기병기류	무기무구류(도검류, 창류, 궁시류, 방어용구, 의전용구 등)	○유래가 분명하지 않으며 명문·문양·장식이 없거나 심한 파손으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복제품
		병장기류(병기, 총포류, 화기류 등)	
외국문화재	도자	청자, 백자 흑유자 등	○우리나라 미술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거나 우리나라 문화재와 관련성이 없는 것 ○예술상, 학술상, 역사상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제작된 지 10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공예	일반공예, 불교공예, 유교공예, 과학기술 용구 및 민속문화재 등	
	조각	불교조각, 일반조각 등	
	회화	중국회화, 일본회화, 불교회화(탱화, 벽화 등)	
	전적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문서류 등	

[별표 3]

비문화재 확인표지(제48조제3항 관련)

[별표 4]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인영(제55조제3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3.11.18〉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가.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1호	허가 취소		
2. 법 제90조·제92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2호	허가 취소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3호	허가 취소		
4.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4호			
가. 거래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별표 6] <개정 2016.2.29.>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제60조 관련)

등급	포상금 지급등급기준
1등급	1.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재(「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는 자 나.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재(「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 다. 문화재청장이 지정, 가지정 또는 지정예고한 문화재(「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절취·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2등급	2.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손상·절취·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3등급	3.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일반동산문화재를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한 자 다. 매장문화재를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 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손상·절취·은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마. 허가 없이 문화재를 국외로 반출 또는 수출하려는 정황을 알고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
4등급	4. 제보에 따라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가.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나. 허가 없이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취득·운반 또는 보관한 자 다.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법정기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
5등급	5.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제보함으로써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미수범을 제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 문화재의 평가액은 사건별로 몰수한 문화재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문화재위원회 규정

문화재위원회 규정

1962. 3.27. 제정 각령 제 577호
1963. 1.22. 각　　령 제 1158호
1969. 1. 8. 대통령령 제 3714호
1970. 2. 7. 대통령령 제 4577호
1971. 2.17. 대통령령 제 5534호
1971. 5.18. 대통령령 제 5639호
1973. 9.15. 대통령령 제 6861호
1983. 5.30. 대통령령 제11139호
1985. 4.26. 대통령령 제11690호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5호
1992. 5.30. 대통령령 제13653호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96.12.31. 대통령령 제15225호
1999. 2. 8. 대통령령 제16112호
1999. 5.24. 대통령령 제16347호
2002. 5. 6. 대통령령 제17599호
2003.12.30. 대통령령 제18198호
2005. 4.15. 대통령령 제18793호
2007. 4.25. 대통령령 제20023호
2008. 9.25. 대통령령 제21032호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9. 4. 6. 대통령령 제21412호
2010.12.31. 대통령령 제22594호
2016. 3.25. 대통령령 제27056호

「문화재위원회 규정」

[시행 2016. 3.28]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구성) 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4.6, 2010.12.31〉

② 삭제〈2010.12.3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개정 2010.12.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0.12.31]

제5조(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5, 2008.10.20, 2009.4.6, 2010.12.31〉

1. 삭제〈2009.4.6〉
2.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3.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사적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근대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삭제<2016.3.25>
6. 삭제〈2009.4.6〉
7.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3호에 따른 기념물(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9.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근대 시설물 및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10.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재에 관한 사항
11.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의 등록, 잠정목록 대상의 조사·발굴,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관한 사항과 이미 등록된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 업무 중 문화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분과위원회의 조직) ① 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2010.12.31〉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신설 2008.9.25〉

제7조(합동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31〉

[전문개정 2008.9.25]

제8조(소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9.25〉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개정 2008.9.25〉

제9조(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의 효력) ①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9.25, 2010.12.31〉

②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외의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9.25〉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3.25〉

1. 위원회의 위원,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2016.3.25>
4.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9.25]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08.9.25〉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20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전문위원은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4.6, 2010.12.31〉

제12조(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질병 · 심신쇠약 ·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13조에 따른 윤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제13조(윤리강령) 위원회는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이 문화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목개정 2010.12.31]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등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개정 2010.12.31〉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개정 2008.9.25, 2010.12.31〉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6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9.25, 2009.4.6〉

제17조(위임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0023호, 2007.4.25〉

이 영은 200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32호, 2008.9.25〉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

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21412호, 2009.4.6〉

이 영은 200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594호, 2010.12.31〉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7056호, 2016.3.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전문위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전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158	제1조(목적) ····· 158	제1조(목적) ····· 158
제2조(정의) ····· 158	제2조(정의) ····· 158	
제3조(기본원칙) ····· 159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 160		
제2장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5조(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 ····· 160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160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 160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161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 161	
제9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 162	제4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 162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163	제5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 163	
	제6조(위원회 해촉) ····· 164	
	제7조(위원회의 회의) ····· 164	
	제8조(소위원회) ····· 165	
	제9조(전문위원) ····· 16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제10조(간사 등) ····· 166	
	제11조(수당) ····· 166	
제3장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166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 166	
	제13조(운영세칙) ····· 167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 167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 167	제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 167
		제3조(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 ····· 168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 168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 168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 168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 ····· 169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 169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 169
		제6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 170
제16조(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 ····· 170		제7조(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절차) ·· 170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 171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 172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 17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 173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 173	
제19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 174	제18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 174	제9조(전수교육조교의 추천) ····· 174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 175		제8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 175
		제10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 175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 176	제19조(전승자등의 인정 해제) ····· 176	제11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 176
		제6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 176
제22조(정기조사 등) ····· 177	제20조(정기조사) ····· 177	제12조(무형문화재 대장) ····· 177
		제13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 178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증표) ····· 178
제23조(신고 사항) ····· 179		제15조(변경신고서) ····· 179
제24조(행정명령) ····· 179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180	제21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 180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 180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180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 180
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 181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 181	제18조(전수교육 이수증) ····· 181
		제19조(기량 심사의 기록) ····· 181
제27조(전수장학생) ····· 182	제24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 182	제20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 18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제28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 183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 183	
	제26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예외 사유) ···· 184	
	제27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점검) ····· 184	
제29조(관람료의 징수) ····· 184		
제30조(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등) ····· 184	제28조(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 계획) ····· 184	
	제29조(전수교육대학의 지원) ····· 185	
	제30조(전수교육대학의 성과평가) ····· 185	
제6장 시 · 도무형문화재		
제31조(시 · 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 186		
제32조(시 · 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 187	제31조(시 ·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권고) ····· 187	
제33조(보고사항) ····· 188		
제34조(전문인력의 배치) ····· 189		
제35조(준용규정) ····· 189		
제36조(이북5도 무형문화재) ····· 189		
제7장 무형문화재의 진흥		
제37조(전승지원 등) ····· 190	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 190	
제38조(무형문화재의 교육 지원등) ····· 191		
제39조(행사 등에서의 지원) ····· 19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 192		
제41조(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 ····· 192		
제42조(인증의 취소) ····· 193	제33조(인증의 취소 절차) ····· 193	
제43조(전승공예품은행) ····· 193		
제44조(창업 · 제작 · 유통 등 지원) ····· 193		
제45조(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지원) ····· 194		
제46조(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 194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 · 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 194		
제9장 보칙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 195		
제49조(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보호) ····· 196		
제50조(인간문화재에 대한 예우) ····· 197		
제5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 197		
제52조(청문) ····· 197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 197	제34조(조사보고서 제출) ····· 197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98	제35조(권한의 위임) ····· 198	제21조(규제의 재검토) ····· 19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제10장 벌칙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199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99	
제5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 200		
제57조(관리행동 방해 등의 죄) ····· 200		
제58조(과태료) ····· 201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201	
부 칙 ····· 202	부 칙 ····· 202	부 칙 ····· 202
	시행령 별표 ····· 20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015. 5. 27. 제정 법률 제13248호	2016 .3.28. 제정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 28.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제16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란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5. “전수교육조교” 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 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 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 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 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대학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 이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인간문화재” 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장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5조(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 무형문화재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무형문화재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무형문화재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	**제4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다)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 라 한다) 무형문화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 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무형문화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전문위원)**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50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문위원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명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 소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라 한다) 보유자 등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	**제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30일 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상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문화재의 기록 ③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국가무형문화재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국가무형문화재 3.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국가무형문화재 ②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2조·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등의 명칭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①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는 전수교육조교(이하 “보유자등” 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보유자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제7조(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2조 ·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문화재등" 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등의 명칭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3. 해당 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④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배점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명예보유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제19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	**제9조(전수교육조교의 추천)**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수교육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조교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유자 등을 인정하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제10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③ 문화재청장은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2. 전수교육조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도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제11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법 제21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보유자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또는 그 보조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정기조사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제20조(정기조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능·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현황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제12조(무형문화재 대장)** ①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대장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이하 "무형문화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무형문화재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무형문화재의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		**제13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증표)**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3. 그 밖에 국가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⑧ 제1항과 제2항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신고 사항)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변경신고서)** 법 제2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행정명령)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문화재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그 밖에 국가무형문화재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수교육조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2.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과 지	**제18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량 심사의 기록)**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표 등 세부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전수장학생)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장학금의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생(이하 “전수장학생”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법 제26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여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제20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2.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⑤ 문화재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⑥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절차·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③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제26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제27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점검)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제30조(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고등교	**제28조(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 계획)**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대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대학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전수교육대학의 선정·심사,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2.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수요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3.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4.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서 5. 그 밖에 전수교육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전수교육대학의 지원)** 문화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수요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시설 · 장비의 구축비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전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0조(전수교육대학의 성과평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전수교육대학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2. 전승자의 교육과정 참여율 3. 시설 · 장비 등 교육환경의 조성 정도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전수교육대학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절차와 세부 기준 등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시 · 도 무형문화재 **제31조(시 · 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 · 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 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시 · 도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 · 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 · 심의에 관한 사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도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시·도무형문화재의 지정 권고)**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도무형문화재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④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도무형문화재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를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도무형문화재 또는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보고 사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2.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3.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해제 4. 시·도무형문화재에 대한 행정명령 및 그 위반 등의 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제34조(전문인력의 배치) 시 ·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인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시 · 도무형문화재 및 시 ·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 취소·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인정 취소·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이수증, 전수장학생, 시·도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중 “문화재청장”은 “시 ·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 · 도무형문화재위원회”로, “국가무형문화재”는 “시·도무형문화재”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시 ·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본다. **제36조(이북5도 무형문화재)** ① 문화재청장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된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무형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장 무형문화재의 진흥		
제37조(전승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 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무형문화재의 교육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행사 등에서의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문화재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 · 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 ①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증을 위하여 해당 전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증을 받은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문화재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제42조(인증의 취소) ① 문화재청장은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작된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해당 전승자가 인증표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전승공예품은행)**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의 구입·대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하 “전승공예품은행” 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창업 · 제작 · 유통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 · 제작 · 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	**제33조(인증의 취소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승자에게 해당 전승공예품의 설명서 및 견본품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지원)** ①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예술 분야 무형문화재의 해외공연,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판매 등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에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둔다. ##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고,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 · 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 · 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아 · 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아 · 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아 · 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아 · 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 · 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① 문화재청장 및 시 ·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 · 사진촬영 · 영상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화·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하고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작성된 기록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국내외 특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문화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제50조(인간문화재에 대한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인간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2조(청문)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2. 제16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 3.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4. 제42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제12조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	**제34조(조사보고서 제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및 재조사 2. 법 제26조에 따른 기량 심사 및 전수교육 이수증의 발급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등 5. 법 제40조에 따른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6. 법 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의 인증 7. 법 제42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취소 8. 법 제43조에 따른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 9. 법 제44조에 따른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10. 법 제48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조사 및 기록화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11.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공개 점검	
제10장 벌칙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제3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3. 제53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관계전문가 등 4. 제5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재청장(법 제54조 및 이 영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 · 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 ·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사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6. 법 제23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량 심사 및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수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	
제5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 전단(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사람 3.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사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51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 · 징수한다.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부 칙 〈제13248호, 2015.3.27〉	**부 칙** 〈제27056호, 2016.3.25〉	**부 칙** 〈제252호, 2016.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형문화재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는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시·도무형문화재는 제32조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2017년도에 수립하는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전수장학생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이 아닌 보유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③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전수(傳授) 교육 조교"를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④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4)가)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학력·경력 요건란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란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으로 한다. 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전문위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전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한다.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삭제한다. ⑦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1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른"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⑨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⑩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7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⑦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도·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를 “시·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⑪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의 시·도사무란 3) 중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시·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⑫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 교육 조교”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자격기준란 제8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시·도 무형문화재”를 “시·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3.25, 제정]
	자로 인정된 사람 및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교육”을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으로, “전수교육”을 각각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전수 교육 조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2.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중에서 일부 기준만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나. 한국의 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다. 표현미, 형식미 등이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라. 제작 기법 및 관련 지식이 전통성과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마.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에 문화재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 제1호	100	300	500
나.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가 아닌 자가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 제2호	300	500	70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목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216	제1조(목적) ····· 216	제1조(목적) ····· 216
제2조(정의) ····· 216	제2조(매장문화재의 정의) ····· 216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 216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 217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 217	제2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 217
제5조(개발사업 계획 · 시행자의 책무) ····· 218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218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 218	제2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 218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 ····· 219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 221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 ····· 221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 221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 224	제6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 ····· 224	제4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 224
제9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 225	제7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 225	제5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 ····· 225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 22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 227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 227	
	제9조(허가 취소 등) ····· 228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 229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 231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 231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 231
	제13조(발굴 완료의 통보) ····· 231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 231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 232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절차 등) ·· 232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 234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 234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 ····· 234
	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 ··· 235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 235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 235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 235	제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 235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 236	제16조(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 236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제17조(발견신고 등) ····· 236	제17조(발견신고) ····· 236	제10조(발견신고 등) ····· 236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 237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 237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 237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 23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 귀속) ····· 239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 239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 239
	제19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 239	
	제20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 관리규정의 마련) ····· 240	
	제21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 240	
	제22조(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처리 방법) ····· 241	
제21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 241	제23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 ····· 241	
	제24조(보상금 등의 지급 절차) ····· 242	제12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 242
제22조(문화재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 242	제25조(매장문화재의 공고) ····· 242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 242
제23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 243	제26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 243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 243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 243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 245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 245	
제6장 보칙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 246	제28조(토지 매입의 방법 등) ····· 24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제27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 247	제29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 247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 247	제30조(매장문화재 기록의 유지 · 관리) ····· 247	
	제31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방안) ····· 247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248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48	
	제33조 삭제 ····· 249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249	제34조(규제의 재검토) ····· 249	제15조(규제의 재검토) ····· 249
제7장 벌칙		
제31조(도굴 등의 죄) ····· 250		
제32조(가중죄) ····· 251		
제33조(미수범) ····· 252		
제34조(과실범) ····· 252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 252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 252		
제37조(양벌규정) ····· 253		
제38조(과태료) ····· 253		
부 칙 ····· 254	부 칙 ····· 254	부 칙 ····· 254
	시행령 별표 ····· 260	시행규칙 별표 ····· 26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3단비교표(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010. 2. 4. 제정 법률 제10001호	**2011. 1.28. 제정 대통령령 제22649호**	**2011. 2.16.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8호**
2011. 7.21. 법률 제10882호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3.12.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3호
2014. 5.28. 법률 제12692호	2012. 7.26. 대통령령 제23994호	2014.12.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1호
2014. 1.28. 법률 제12350호	2014.12.30. 대통령령 제25916호	2015. 8.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 8. 3.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12.22.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제2조(매장문화재의 정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역에 존재하는 유형의 문화재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유형문화재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문화재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3.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 이후에 법 제14조에 따라 그 매장문화재가 보존조치된 지역 4.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5.「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 6.「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7.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제2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① 문화재청장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및「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문화재청장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정보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표시방법 및 추가 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제2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① 문화재청장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2.7.26〉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문화재청장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나.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 결과 등에 따르는 경우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라. 삭제 〈2015.8.3.〉 마. 삭제 〈2015.8.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해당 건설공사가 지표조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③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8.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으면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시행 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1. 절토(切土)나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2.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浚渫),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복토(覆土)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立木)·죽(竹)의 식재(植栽), 벌채(伐採) 또는 솎아베기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그 지표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표조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영 제13조에 따른 발굴 완료의 통보를 받으면 영 제25조에 따라 지체 없이 매장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축척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 2. 건설공사 계획서(지하 굴착계획,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등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 해당 사업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3. 해당 사업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 또는 방법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문화재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 · 유지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3.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게 되는 영향 ④ 문화재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표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⑤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신설 2014.12.30〉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제목개정 2014.12.3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1. 성토(성토: 흙 쌓기) 또는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2.「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또는「연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골재 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3.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	**제4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영 제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란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2.30.〉 1.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조사원 이상의 지위로 재직 중인 조사 요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 중인 교원 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공립 박물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 4.「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9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현상보존 2. 삭제 〈2015.8.3.〉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5.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명령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26〉 1. 현상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현재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 2. 삭제 〈2015.8.26〉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제4조제1호에 따른 조사 요원의 경우에는 소속 조사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가.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나.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3. 사업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다.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6.〉 1. 현상보존: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측량성과도, 보존조치 현장 사진 및 향후 관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입회조사 지역의 위치도·전경 사진, 입회조사 광경 사진 및 건설공사 완료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별지 제4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발굴조사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유구(遺構)·유물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8.2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2. 조사기관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3. 발굴기간이 200일 이상인 사업 4. 발굴기간, 발굴비용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4.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법 제2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정한 용역대가의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매장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 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취득에 따른 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 등 허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허가 내용(부관을 포함한다) 및 발굴 시 준수하도록 한 사항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④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명시하여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물·유구가 출토되는 경우 2. 조사기관에서 발굴조사단의 구성 인력을 발굴조사의 진행 중에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⑤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위반행위 또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의 정지나 중지 또는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문화재청장은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 「주택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322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322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발굴의 필요 여부 및 범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보존 방안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발굴 완료의 통보)**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된 유물의 현황 및 조사의견 등의 내용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에 관한 계획서. 이 경우 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 · 범위 · 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 “조사 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단장: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 · 감독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2.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 조사 보고서 발간, 매장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3. 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4. 준조사원: 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5. 보조원: 준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서 제토(제토: 흙 고르기), 매장문화재 세척 등 단순 업무 수행 6. 보존과학연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처리 업무 수행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를 준용한다.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①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1.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도(古都)지역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2. 수중문화재 분포지역 3. 폐사지(廢寺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 시기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토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1〉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발굴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조사기관,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문화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5.8.3.〉 1. 현지보존 2. 이전(移轉)보존 3. 기록보존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8.3.〉 ③ 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④ 제1항 각 호의 보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3.〉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지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2. 이전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지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매장문화재의 가치: 매장문화재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2.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 매장문화재의 내부·외부 및 매장문화재주변의 보존 상태 3.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매장문화재의 접근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명칭 2.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면적 또는 수량 3.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②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와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8.3.]	이용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4.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사익 ③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준공도서, 측량성과도, 보존조치 현장 사진 및 향후 관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8.26.]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문화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가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3.]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①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	**제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굴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現狀)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법 제1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현상(現狀)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발굴허가"는 "현상변경허가"로 본다.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제17조(발견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0조(발견신고 등)** 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법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매장문화재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사본 2.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사진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가 있으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며,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鑑定)한 결과, 해당 물건이 문화재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며, 해당 물건이 문화재가 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 귀속)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9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는 국가 귀속대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상 문화재로 한다. 〈개정 2015.8.3.〉 **제20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 관리규정의 마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 · 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문화재보호법」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 · 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① 문화재청장,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은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으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를 대여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연구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처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21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유실물법」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23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비를 보상금 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상금 등의 지급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제3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문화재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	**제25조(매장문화재의 공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영 제13조에 따른 발굴 완료의 통보를 받으면 영 제25조에 따라 지체 없이 매장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문화재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 ·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문화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6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발견신고된 문화재"는"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로 본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①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5.28〉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 ②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④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현황 1부 2. 시설 현황 1부 ⑤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3항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7.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업무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지표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 조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포괄승계인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조사기관으로 본다. ④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	**제28조(토지 매입의 방법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법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입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삭제 〈2015.8.3.〉 ③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7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9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매장문화재 기록의 유지·관리)**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방안)** ①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된 지역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대한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해, 사태(沙汰),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2. 보호·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②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8.3.>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조치명령. 다만, 사업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3. 법 제22조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공고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정(鑑定), 통지 및 반환에 관한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의 조사 · 발굴 결과에 관한 홍보 2. 매장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3. 매장문화재에 관한 연구 성과물 출판 4.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5.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제33조 삭제 〈2015.12.30.〉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8.26.〉 1. 제5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 등: 201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관리규정 마련: 2015년 1월 1일 3. 제27조,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및 등록제한 기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0.]	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 범위: 2014년 1월 1일 3.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 2016년 1월 1일 4. 별표 4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제7장 벌칙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情)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자가 그 정을 알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유·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제32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31조의 죄를 범하면 같은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조(미수범)** ① 제3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3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과실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문화재를 몰수한다.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부 칙 〈제10001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3 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매장문화재의 보호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 4 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 5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②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22649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은 이 영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지표조사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발굴 완료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굴허가 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발견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견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관 · 관리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 · 관리하는 보관 · 관리관청은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그 보관 ·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계속하여 보관 · 관리한다.	부 칙 〈제78호,201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63호,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③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⑤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로 한다. ②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1항제5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로 한다. 제47조제4호나목중 "「문화재보호법」"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일 것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④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1조"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0882호,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부 칙 〈제23994호,2012.7.2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③생략	
부 칙 〈제12350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표조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5916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91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회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부 칙 〈제12692호,2014.5.28〉 (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소유권 판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소유권 판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제26458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견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원형 보존"을 "현지보	**부 칙 〈제217호,2015.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2호, 2014.1.28,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7호, 2015.8.26, 일부개정]
	존"으로 한다. **부 칙 〈제26754호,2015.12.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25〉부터 〈42〉까지 생략 부 칙 〈제26774호,2015.12.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1] <개정 2015.8.3.>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제2조 관련)

1. 지각의 형성과 관계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가.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나.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다.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露頭)와 그 분포지
   라.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2.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퇴적구조와 암석
   가.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나. 퇴적구조: 연흔(漣痕),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등
   다.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베개 용암(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3.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가. 구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단구, 하안단구, 폭포 등
   나.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단성화산체(單成火山體), 화구(火口),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환상 복합암체 등
   다.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사구, 해빈(海濱), 갯벌, 육계도,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카르스트 지형,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선상지(扇狀地), 삼각주, 사주(砂洲) 등
   라.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등
   마. 그 밖에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4.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지질 현상
   가. 얼음골, 풍혈
   나. 샘: 온천, 냉천, 광천
   다. 특이한 해양 현상 등

[별표 2]

발굴허가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허가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허가제한기간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3년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호	3년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3호	2년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호	2년

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호	2년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5호	2년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6호	6개월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신청서 중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법 제12조제2항, 제25조제1항제7호	2개월

[별표 3]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등급	포상금의 지급 대상	포상금
1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00만원+(문화재의 평가액-1억원)×(5/100)
2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1,500만원
3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
4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5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00만원

비고: 1등급의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4]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업무정지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3.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조사기관이 그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업무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Ⅱ.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처분기준
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 1차 위반: 1년 · 2차 이상 위반: 2년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4.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6개월
5.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7호	3개월

[별표 5]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등록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등록제한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3년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3년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2년
4. 별표 4 Ⅰ. 일반기준 제3호에 해당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6개월

[별표 1] <개정 2015.8.26.>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제3조 관련)

구 분	지표조사 실시시기
1. 도시 및 농어촌의 개발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완료 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수립 완료 전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차.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작성 완료 전 카.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공사 ○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 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3. 에너지 개발	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수립 완료 전 나.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의 설치공사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마.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4. 항만의 건설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 ○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관한 공사

	○ 「항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라.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항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5.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6. 수자원의 개발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건설사업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사 ○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8.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 「항공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하천공사 ○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10. 공유수면의 매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11. 관광단지의 개발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 작성 완료 전 다. 「온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에서의 온천개발사업 ○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수립 완료 전 ○ 민간공원추진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12. 특정지역의 개발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평택시개발사업 중의 경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 같은 법 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규정된 자가 시행자인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완료 전 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바.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13. 체육시설의 설치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전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수립 완료 전
14.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15. 임도 설치 및 임산물의 굴취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설계의 작성 완료 전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 허가를 받기 전
16. 그 밖의 건설공사	위 각 호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별표 2]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9조 관련)

구분	주요 항목	세부 항목
목차	목차	목차(범례를 포함한다)
머리글	조사 경위와 목적	조사 경위와 목적
	조사단 구성	발굴 및 보고서 참여 인력
자연환경 및 고고환경	자연환경	유적의 입지와 환경
	고고환경	주변 유적과 역사적 배경
조사의 범위와 방법	조사 범위	조사의 범위와 대상
		유구(遺構)의 분포와 배치
	조사 방법	조사 방법
	유적의 층위	전체 층위
조사 내용	본문	유구 내용
		유물 내용
	도면	유구 및 유물의 실측
		유구 및 유물의 편집
		축소비율
	사진	유적 및 유구의 사진
		유물 사진
		사진의 편집
맺음말	결론 및 분석	종합적 분석
		편년(編年)
		요약
		초록

[별표 3]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육상발굴조사기관

구분	자격기준
조사단장	○ 해당 발굴조사기관의 장일 것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학예연구관일 것 ○ 책임조사원으로서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책임조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관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준조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보조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조원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존과학연구원	○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2. 육상지표조사기관

등급	자격기준
조사단장	○ 해당 지표조사기관의 장일 것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예연구관일 것 ○ 책임조사원으로서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책임조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관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 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준조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 외의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3. 수중지표조사기관

등급	자격기준
조사단장	○ 해당 지표조사기관의 장일 것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일 것 ○ 국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예연구관일 것 ○ 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책임조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학예연구관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학예연구사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문화재 분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문화재 관련학과를 전공한 학예연구사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수중 분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준조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해양조사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4. 수중발굴조사기관

등급	자격기준
조사단장	○ 해당 발굴조사기관의 장일 것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예연구관일 것 ○ 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책임조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학예연구관일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학예연구사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조사원	<문화재 분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문화재 관련학과를 전공한 학예연구사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수중 분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매장문화

	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준조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 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보조원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보존과학 연구원	○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 비고

1. "문화재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전통건축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2. "매장문화재 전공"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인류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3. "해양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지구물리학과, 해양학과, 지질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해양문화재 조사·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4. "보존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과학과, 보존과학과, 예술관리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5. "발굴조사경력"이란 조사 요원으로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현장조사기간을 말한다.
6.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이란 지표조사, 입회조사 및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현장조사기간이나 매장문화재 정리작업 및 조사보고서 작성작업에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

[별표 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

구분	인력 기준	시설 기준
육상발굴조사 기관	○ 조사단장 1명 ○ 책임조사원 1명 ○ 조사원 2명 ○ 준조사원 2명 ○ 보조원 2명 ○ 보존과학연구원 1명	○ 항온·항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기자재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발굴에 필요한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육상지표조사 기관	○ 조사단장 1명 ○ 책임조사원 1명 ○ 조사원 1명 ○ 준조사원 1명	○ 항온·항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기자재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수중지표조사 기관	○ 조사단장 1명 ○ 책임조사원 1명 ○ 조사원 2명(문화재 분야 1명, 수중 분야 ○ 준조사원 1명	○ 항온·항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정리시설: 31명)3제곱미터 이상 ○ 기자재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정밀해상위치측정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2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수중발굴조사 기관	○ 조사단장 1명 ○ 책임조사원 1명 ○ 조사원 3명(문화재 1명, 수중 분야 2명) ○ 준조사원 2명 ○ 보조원 2명 ○ 보존과학연구원 2명	○ 항온·항습 수장시설: 300제곱미터 이상 ○ 보존처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연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정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기자재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잠수사 감압챔버, 수중무인카메라(ROV), 수중비디오카메라(고탁도용), 위성위치측정기, 수중영상전송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4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비고

가. 조사단장은 책임조사원 겸임이 가능하다.

나.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조사기관의 상근직 조사 요원이어야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호의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등록기준에 따른다.

가. 육상발굴조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은 각 1명으로 한다.

나. 보존처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보존과학연구원에 대한 인력 기준, 보존처리시설 및 보존처리 기자재에 대한 시설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목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278	제1조(목적) ····· 278	제1조(목적) ····· 278
제2조(정의) ····· 278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79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 279	제2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 279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 279	제3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279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 279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 280	
	제5조(위원의 임기) ····· 281	
	제6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 281	
	제6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 282	
	제6조의3(위원의 해촉) ····· 283	
	제7조(간사 및 서기) ····· 284	
	제8조(소위원회) ····· 284	
	제9조 삭제 ····· 285	
	제10조(운영 세칙) ····· 285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 285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 286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제6조(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 287	제11조(타당성조사) ····· 28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제11조의2(기초조사) ····· 289	
제7조(고도의 지정) ····· 290	제12조(고도의 지정 요청) ····· 290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291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291	
	제15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291	
	제16조(기본계획의 공고) ····· 292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292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 293	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 293	제3조(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293
	제16조의3(시행계획의 공고) ····· 293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294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294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 295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295	제4조(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 295
	제16조의5(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 296	
	제17조 삭제 ····· 297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297	제18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297	제5조(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 297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 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298	제6조(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 298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298	
	제20조의2(허가 기준) ····· 299	
제11조의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 30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제12조(인 · 허가 등의 의제) ····· 300		
제13조(허가의 취소) ····· 305		
제14조(행정 명령) ····· 305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제15조(사업시행자) ····· 306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306
제16조(사업 비용) ····· 307		
제17조(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 308	제20조의3(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 308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 309	제20조의4(주민지원사업) ····· 309 제22조의3(공용 · 공공용시설 등) ····· 309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 310		
제17조의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 310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 310		
제18조(이주대책) ····· 310	제21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 310	
제19조(토지 · 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 311	제22조(매수절차 등) ····· 311 제22조의2(매수대상 기준) ····· 311	제8조(매수청구 절차) ····· 311
제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 312	제22조의3(공용 · 공공용시설 등) ····· 31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제4장 보칙		
제20조(국 · 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313		
제21조(조세의 감면) ····· 314		
제22조(보고 및 검사) ····· 314		
제23조(토지 출입 등) ····· 314		
제24조(권한의 위임 · 위탁) ····· 315	제23조(권한의 위임) ····· 315	
제25조(청문) ····· 316	제24조 삭제 ····· 316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317		제9조(규제의 재검토) ····· 317
제5장 벌칙		
제26조(벌칙) ····· 317		
제27조(양벌규정) ····· 318		
제28조(과태료) ····· 318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318	
부 칙 ····· 320	부 칙 ····· 320	부 칙 ····· 320
	시행령 별표 ····· 332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2004. 3. 5. 제정 법률 제7178호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 9.27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2007. 4.11 법률 제8352호(농지법)
2007. 4.11 법률 제8370호(수도법)
2007.12.21 법률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법률 제8740호
2008. 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76호(도로법)
2008.12.26 법률 제9213호
2008.12.31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9. 5. 8 법률 제9656호
2009. 6. 9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2010. 3.31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2011. 4.14.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7.21 법률 제10881호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4. 1.14 법률 제12248호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5. 3.27 법률 제13245호

시 행 령

2005. 3. 5 제정 대통령령 제18730호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7. 8.17 대통령령 제2022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08. 7.24 대통령령 제20935호
2009.11. 9 대통령령 제21812호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육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2.29 대통령령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 4.10 대통령령 제1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7.26 대통령령 제23994호
2012.12.28 대통령령 제24279호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0호
2015. 9.28 대통령령 제26522호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시 행 규 칙

2005. 3. 5 제정 문화관광부령 제106호
2008. 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호
2012. 8.1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5호
2013.12.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3호
2015. 9.1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 3단비교표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전문개정 2008.7.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1.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3. "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하"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7.26]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중앙심의위원회"라	**제3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26〉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1〉 1. 제7조에 따른 고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1〉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5.8, 2011.7.21〉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보존육성사업(이하"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7.26.]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7.26〉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10〉 [전문개정 2008.7.2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개정 2014.11.1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 ·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⑤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1]	2009.11.9, 2012.7.26〉 ③ 삭제 〈2009.11.9〉 [전문개정 2008.7.24.]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6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7.26〉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심의안건을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7.26〉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7.26〉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5.9.15.〉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7.26]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15.] **제6조의3(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본조신설 2015.9.15.]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심의위원회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7.26〉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8조(소위원회)** ① 중앙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에 소중앙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7.26〉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중앙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26〉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① 고도의 보존·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제9조 삭제** 〈2008.7.24〉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회의원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3.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1.]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본조신설 2011.7.21]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제6조(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제11조(타당성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는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7.26., 2015.9.15.〉 1.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2.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문화재와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 지질,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계획 6. 해당 지역의 역사적·학술적 중요성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3.27.]	7.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필요성 8. 고도 지정이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7.26., 2015.9.15.〉 [전문개정 2008.7.2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제목개정 2015.9.15.] **제11조의2(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2.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문화재와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 인구, 자연환경 등 지역적 특성 5.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현황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계획 7. 그 밖에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는 "기초조사"로 본다. [본조신설 2015.9.1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제7조(고도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②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3.27.〉 ③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의 방법, 절차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5.3.27.]	**제12조(고도의 지정 요청)**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서(타당성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를 제출한다)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3.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시장·군수·구청장만 해당한다) 4.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 결과를 적은 서류(시·도지사만 해당한다) 5.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서 [본조신설 2012.7.26.] [종전 제12조는 제16조의4로 이동 〈2012.7.26.〉] **제13조** [제13조는 제16조의5로 이동 〈2012.7.2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도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고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도의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고도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9.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0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2.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지정지구"라 한다)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7.26] **제15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26〉 1.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사업과 유치 방안 2.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3.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고도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하면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4.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7.26] **제16조(기본계획의 공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7.26.]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삭제 〈2012.7.2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전문개정 2008.7.24.] [제12조에서 이동 〈2012.7.26.〉]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	**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본조신설 2012.7.26] **제16조의3(시행계획의 공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의	**제3조(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1.]	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본조신설 2012.7.26.]	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8.10]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고도를 지정하거나 고도의 지정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삭제 〈2012.7.2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을 요청하는 경우 2.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전문개정 2008.7.24.] [제12조에서 이동 〈2012.7.26.〉]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0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2.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형태와 범	**제4조(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를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	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7.26] **제16조의5(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1. 지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자세한 내용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7.26.]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1. 지정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사유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8.1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르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3조에서 이동 〈2012.7.26.〉]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4.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	**제17조** 삭제 〈2012.7.26〉 **제18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切土)·성토(盛土)·굴착·천공(穿孔)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3.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4.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	**제5조(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2015.9.15.〉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2. 관련 설계도서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4. 도로의 신설·확장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7.26]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7.26]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2. 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4.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보수 [전문개정 2008.7.24]	그 허가신청서류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2015.9.15.〉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8.10.] **제6조(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2015.9.15.〉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8.1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2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09.5.8]	**제20조의2(허가 기준)** ①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9.15〉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을 정한 조례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하려는 사유 2. 그 밖에 허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7.2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제11조의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위치 및 같은 법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②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7.21] **제12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신고·해제·동의·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4.1.14.〉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轉用) 허가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9.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1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9.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2.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2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지구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 법률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사실상의 협의를 포함한다)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허가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4조(행정 명령)**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3.27.〉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3.27.〉 [전문개정 2007.12.21.]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제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1]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1. 업종별 면허증 · 허가증(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자의 인력 · 기술 ·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시행계획서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8.10]
제16조(사업 비용)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1] **제17조(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 및 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 2.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지정지구 안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을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 · 사용,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제20조의3(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1. 보존육성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 2. 지정지구로 둘러싸여 있거나 지정지구와 연접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직접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토지등 [본조신설 2012.7.2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법률」을 준용하며,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 있으면 같은 법 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1]	**제20조의4(주민지원사업)** 법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 · 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사업 2. 마을도서관 · 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3.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 사업 [본조신설 2012.7.26] **제22조의3(공용 · 공공용시설 등)**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 ·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7.2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1]		
제17조의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1]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1]		
제18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육성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려면	**제21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지의 위치 2. 이주대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계획 3. 택지 조성 및 주택의 건설계획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미리 해당 고도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4. 이주정착지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이주보상액,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6. 이주방법과 이주시기 [전문개정 2008.7.24]	
제19조(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을 이유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1. 지정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지정지구 안의 해당 토지·건물 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에 따른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한 자 3. 지정지구에서 해당 토지·건물 등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이 매수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	**제22조(매수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청구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와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22조의2(매수대상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	**제8조(매수청구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별보존지구(보존육성지구) 토지·건물 등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1. 토지·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수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건물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전문개정 2008.7.2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는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③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 · 건물 등의 보상액 · 보상시기 · 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 · 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대상 기준, 매수 기한,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지 · 건물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 · 건물 등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매수를 청구할 당시 지정지구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지정지구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地籍公簿)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정지구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를 청구한 날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 · 면 · 동의 지정지구 내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토지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2.7.26]	
제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 · 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제22조의3(공용 · 공공용시설 등)**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본조신설 2011.7.21]	공용·공공용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7.26]	
제4장 보칙		
제2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7.21〉 ②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7.12.21] **제22조(보고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② 제1항에 따라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토지 출입 등)** ①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자 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9.15〉 1. 삭제 〈2012.7.26〉 2. 법 제6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3. 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주민의 의견 수렴 3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폐지승인 4. 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4의2. 법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의 지정등 5.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 허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5의2.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른 협의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시 사전협의 7.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8. 법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필요 조치 9.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협의 9의2. 법 제17조의5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10.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11.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토지 출입·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11의2.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25조에 따른 청문 1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2008.7.24]	
	제24조 삭제 〈2015.12.30〉	
제2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1]		**제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절차: 2016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절차: 2016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5.9.15.]
제5장 벌칙		
제26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원상회복 등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제23조에 따른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 출입·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9.1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3.27.〉 ③ 삭제 〈2009.5.8〉 ④ 삭제 〈2009.5.8〉 ⑤ 삭제 〈2009.5.8〉 [전문개정 2007.12.2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부칙 〈제7178호,2004.3.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부칙 〈제18730호,2005.3.5〉** 이 영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4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중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⑩내지 〈241〉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6호,2005.3.5〉** 이 규칙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08.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1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 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④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④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55조제5항"을 "제70조제5항"으로 한다. ③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935호,200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12호,2009.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80호,2010.12.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488호,2012.1.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③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수도법」 제17조 ·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44호,2012.2.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전임강사"를"조교수"로 한다. ⑥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18호,2012.4.1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②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740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3〉 까지 생략 〈24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 · 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 · 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994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0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 로 한다.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9조 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부칙 〈제24279호,2012.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24450호,2013.3.2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도로법」제8조"를"「도로법」제5조"로,"같은 법 제25조"를"같은 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④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213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9656호,2009.5.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제3호 · 제4호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 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③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③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부칙 〈제10881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의 지정에 따라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한 이후에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하기 전에 받은 허가(허가신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전에 적용된 법률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수립·승인된 고도보존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승인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 종전의 고도보존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계획을 수립·변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특별보존지구 및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이 법에 따른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로 각각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1호 |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7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2호 |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부칙〈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5〉까지 생략 〈26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2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제12248호,2014.1.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⑨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245호, 2015.3.27,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타법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 2015.9.15, 일부개정]
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제13245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조사로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도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에 있는 기초조사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당성조사로 본다.	**부칙 〈제26522호,2015.9.15〉**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74호,2015.12.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 · 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18호, 2015.9.15〉**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5.9.15.〉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허가 대상 행위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해야 하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개축·증축·이축(이하 "신축등"이라 한다),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등, 도로 및 광고물의 형태, 색상 등 외관과 규모 및 용도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 건축물등의 신축등, 도로의 신설·확장,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시 굴착(掘鑿) 과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형 변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허가 대상 행위를 하면서 기계, 중장비 및 차량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기계, 중장비 및 차량 등에 의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2. 건축물등의 신축등

가. 건축물등의 신축등을 하는 경우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 및 용도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특별보존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 및 용도

가) 건축물등의 지붕, 담장 및 대문은 해당 고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 색상,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건축물등을 개축, 이축하는 경우 층수는 기존 층수를 유지하며, 신축하는 경우 2층 이하의 저층으로 한다.

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조망을 저해하는, 한 변이 지나치게 긴 건축물등을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 건축물등은 다음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등이 아니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2)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 및 용도

가) 건축물등의 외관, 규모는 가능하면 1)가)부터 다)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나) 건축물등의 용도는 1)라)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전통 담장이나 녹지 등을 이용한 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건축물등의 신축 및 이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3)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건축물을 원형 복원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4)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5) 공중화장실이나 경찰, 소방, 방재 등을 위한 공용·공공용 건축물등을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6) 해당 지역에 설치할 필요성이 큰 생활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을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7)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다만, 존치기간은 2년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농업용·임업용·어업용으로 사용할 가설 창고, 작업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설건축물

(1) 최고높이는 특별보존지구에서 5미터(경사지붕이 있는 경우 7.5미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10미터(경사지붕이 있는 경우 12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특별보존지구에서 가설건축물의 면적은 농업용·임업용·어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며 5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나) 그 밖에 생활편익을 위해 신축하는 가설건축물

8)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및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특별보존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증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등 연면적 합계의 1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것이어야 하며, 같은 필지 내에서 건축물등의 증축은 한 차례만 허용된다.

1) 층수를 늘리지 않는 경우

2)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층수를 늘리는 경우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증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구 지정 당시의 건축물등 연면적 합계의 5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1) 2층 이내에서 주변 건축물등의 높이를 넘지 않도록 증축하는 경우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마. 지정지구의 건축물등을 다른 장소로 이축할 경우 이축 후 건축물등이 있던 토지를 주변의 표고(標高), 경사도 등 지형과 배수를 고려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지(整地)해야 한다.

3. 건축물등의 용도변경

특별보존지구에서 건축물등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나.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

다. 기존 건축물등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 및 제27호로 변경하는 경우

4.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가.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2) 허가받은 건축물등의 신축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수·정비·조사하기 위한 경우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경우

5) 용수·배수 시설의 설치, 농도(農道)·임도(林道)의 설치,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을 위한 경우

6)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광장, 주차장, 매점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경우

7) 재해방지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8)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2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10)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토 및 성토를 하면서 생긴 경사면 또는 절개면은 석축 또는 옹벽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석축 또는 옹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외장은 석재, 목재 등 전통형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5.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가. 수목을 심는 경우 가능하면 우리나라 고유 수종(樹種)을 심어야 한다.

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조망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림막이 필요한 건축물등은 수목을 심어 그 건축물등을 가려야 한다.

다. 수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양호한 조망을 위해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발굴을 위해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3) 산불, 천재지변 또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4) 허가받은 건축물등의 신축등,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조성 및 관리를 목적으로 산림지역에서 수목을 벌채하거나 조림(造林)을 위해 수목을 심는 경우

6)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적합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외래 수종을 벌채하거나 고유 수종을 심는 경우

7)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목을 벌채하거나 심는 경우

8) 개별 사유지에서 텃밭을 가꾸거나 미관 및 조경을 위해 수목을 벌채 또는 심는 경우

9) 급경사지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수목을 심는 경우

6.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가. 토석류의 채취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어야 한다.

2)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

3) 대기·수질·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나. 토석류의 적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목 1)부터 3)까지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이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발굴 등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어야 한다.

3) 토석류의 적치로 역사문화환경의 조망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적치의 목적을 달성한 후 1개월 내에 원상 복구해야 한다.

7.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가. 가능하면 가로시설물에는 전통 디자인을 적용하고 가로수는 고유 수종을 심어야 한다.

나. 포장재의 재질, 무늬, 색채 등이 전통성을 띄도록 하며, 보도(步道)의 무늬는 해당 고도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형상을 활용하고, 가능하면 원색 계열의 색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주택가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도로의 규모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며, 도로를 신설할 경우 도로의 규모는 6미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8. 그 밖의 행위

가.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성토·굴착·천공(穿孔)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와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나. 특별보존지구에서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와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피해가 없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지 않으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 특별보존지구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광고물의 표시 위치 및 크기 등이 해당 영업내용 등의 표시를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광고물의 색채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어울리도록 하며, 원색 계열의 색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 빛이 점멸하는 조명

나) 화면의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조명

다) 원색의 조명

4) 광고물의 재질은 합성 및 인공 재질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 석재, 동판 등 전통적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5) 광고물의 서체는 전통적인 서체를 사용해야 한다.

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제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별표 2] <신설 2015.9.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23조에 따른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 출입·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346	제1조(목적) ····· 346	제1조(목적) ····· 346
제2조(정의) ····· 346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 ····· 346	
제3조(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 349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 349	제3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349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 350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 350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 350	
제6조(성실의무) ····· 351		제2조(성실의무) ····· 351
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 352	제6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352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 352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 352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 352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 353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 354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 355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 35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 356		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 356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 357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 357	
제12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 358		제5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 358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358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		
제1절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 358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 358	제6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 358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 360
		제8조(변경신고 등) ····· 361
		제9조(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 362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 363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 363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 364	제13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 364	
	제14조(부대 문화재수리의 범위 등) ····· 364	
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 364		제11조(문화재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 364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 367
제18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용) ····· 36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제19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 ····· 369		
제20조(문화재수리업의 상속) ····· 369		제13조(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 369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 370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 수리) ····· 370		
제23조(준용) ····· 371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4조(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 371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 ····· 371	제14조(도급 대장) ····· 371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 373	제16조(하도급의 통보) ····· 373	제15조(하도급의 통보) ····· 373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 374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 374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 374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 375		제16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 375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 378		
제31조(검사 및 인도) ····· 378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 379	제17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 379	
제3절 문화재수리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 379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 379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 37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제34조(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381		
제35조(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 382	제19조(하자담보책임 기간) ····· 382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 383		
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 383		
제4절 감리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 384	제20조(감리대상 등) ····· 384	제18조(감리보고서) ····· 384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 385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 386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 386	제20조(감리일지) ····· 387
제39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 387	제23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 387	
제40조(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 388		
제41조(감리의 제한) ····· 388	제24조(감리의 제한) ····· 388	
제4장 문화재수리협회		
제42조(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 388	제25조(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 388	
	제26조(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 389	
제43조(문화재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 390		
제44조(「민법」의 준용) ····· 391		
제5장 감독		
제45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 39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제46조(시정명령 등) ····· 392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 393		제21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 393
제48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 395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 395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 395	제22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 395
제6장 보칙		
제50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 398	제27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 398	
제51조(수수료) ····· 398		제23조(수수료) ····· 398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 400		
제5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 401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 401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 402 제30조(권한의 위임 · 위탁) ····· 404	제20조(감리일지) ····· 401 제24조(보수교육 수료증) ····· 402
제54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 404	제29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 404	제25조(문화재수리의 평가) ····· 404 제26조(실측설계의 평가) ····· 405 제27조(우수 문화재수리업자의 지정) ····· 406 제28조(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지정) ····· 407
제55조(청문) ····· 408		
제56조(권한의 위임 · 위탁) ····· 408	제30조(권한의 위임 · 위탁) ····· 408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0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410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 410	제29조(규제의 재검토) ····· 410
제7장 벌칙		
제58조(벌칙) ····· 410		
제59조(벌칙) ····· 411		
제60조(벌칙) ····· 412		
제61조(양벌규정) ····· 412		
제62조(과태료) ····· 413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413	
부 칙 ····· 414	부 칙 ····· 414	부 칙 ····· 414
	시행령 [별표] ····· 419	시행령 [별표] ····· 42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3단비교표(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010. 2. 4. 제정 법률 제9999호	**2011. 1.26. 제정 대통령령 제22638호**	**2011. 2. 1.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7호**
2013.12.11. 법률 제11530호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6. 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8호
2014. 5.28. 법률 제12693호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7.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5. 3.27. 법률 제13248호	2012. 7.10. 대통령령 제23943호	2014.12.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0호
2015. 3.27. 법률 제13250호	2013. 7.30. 대통령령 제24676호	2015. 2.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2호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2016. 2.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4.11.11. 대통령령 제25711호	
	2014.12.16. 대통령령 제2585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 다.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문화재수리기술자"란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소유자 및 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3. "문화재수리기능자"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문화재수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재수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실측설계"란 문화재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7. "문화재실측설계업"이란 이 법에 따른 실측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문화재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감리"란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10. "문화재감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한다]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11. "문화재감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2. "문화재감리원"이란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소속되어 문화재수리에 따른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발주자"란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5.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를 말한다. 16.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1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문화재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문화재보호법」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 2.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 3. 문화재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업자 ·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16>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은 동산문화재 분야의 문화재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1. 문화재청 2. 국립중앙박물관 3. 국립현대미술관 4. 국립민속박물관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1. 식물보호 분야 가. 식물의 보존 · 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및 토양개량 분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의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분야 2. 동산문화재 분야 가. 박제 및 표본 제작 분야 나. 조각 분야 다. 표구 분야 라. 칠공(漆工) 분야 마. 도금 분야 바. 모사(模寫) 분야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제6조(성실의무)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		**제2조(성실의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3.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품질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 각 호의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에 응시하려는 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90일 전까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5.1〉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 과목 4. 합격자 발표 일시, 방법 및 장소 5. 응시원서의 발급 기간·장소 및 접수 기간·장소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의 심사 기준일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16.> 1.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4. 문화재수리기능자일 것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람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과목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해당 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응용력 2.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3.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 올바른 직업윤리관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①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중복하여 취업		**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①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기시험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되, 실기시험 합격자는 실기시험 심사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공고·응시원서, 면접시험의 평가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 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12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5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		
제1절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①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4.12.16> 1. 별표 7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	**제6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⑦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우에는 문화재수리업등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가. 법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지났을 것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을 것 5. 문화재실측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3.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5.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일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주된 영업소 소재지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문화재실측설계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 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제8조(변경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수첩 나.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다.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 ②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업자등"이라 한다)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移轉)되면 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9조(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건축사법」(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9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6.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 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한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7.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8.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문화재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두 종류 이상의 공종(工種)이 복합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문문화재수리업은 문화재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14조(부대 문화재수리의 범위 등)**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1.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시행함으로 인하여 필요한 종된 문화재수리 2.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가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전체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전체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문화재수리	
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문화재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있은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요건과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5.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문화재수리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③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서류의 작성·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1. 양도하려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2. 양도 예정 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를 받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 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양수인이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3. 법 제17조제3항,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의 영위기간 및 문화재수리 공사금액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 1. 개인이 영위하던 문화재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문화재수리업과 문화재수리업이 아닌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회사 또는 분할합병한 다른 회사에 그 회사가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⑦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에 따른 영위기간 등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에 따라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법인합병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용) ①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행 중인 문화재수리의 도급에 관한 권리·의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2. 문화재수리가 끝났으나 그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 · 의무 ② 제1항의 경우 시행 중인 문화재수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49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不正當業者)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20조(문화재수리업의 상속) ① 문화재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문화		**제13조(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 사실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재수리업자의 모든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상속인은 문화재수리업을 상속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사실을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문화재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 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서류의 작성 · 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수리) ①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④ 문화재수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4조(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	**제14조(도급 대장)**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문화재수리 도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급 금액, 수리기간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항을 말한다. 1. 문화재수리등의 구체적 내용 2. 문화재수리등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3.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4. 문화재수리등의 중지 또는 계약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도급금액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그 밖에 해당 문화재수리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8. 해당 문화재수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9. 도급 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0. 문화재수리등의 완성 후의 도급금액 지급 시기 11. 계약이행 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대장을,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문화재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12.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문화재수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	**제16조(하도급의 통보)**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재감리업자가 감리를 하는 문화재수리로서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문화재감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린 것으로 본다.	**제15조(하도급의 통보)**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하도급 통보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규모·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 예정공정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업자는 이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④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법 및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한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 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았을 때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 변경 또는 물가 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문화재수리 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문화재수리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16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것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문화재수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문화재수리의 하도급 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문화재수리 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문화재수리의 대금을 청구할 때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의 하도급 대금을 분명하게 밝혀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 대금의 수령인을 그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가. 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성(旣成) 부분과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에 따른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완료 시점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하도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그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①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을 체결한 발주자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검사 및 인도)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문화재수리의 완료 또는 기성(旣成) 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 문화재수리가 계약대로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를 하거나 설계도서대로 문화재수리를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3절 문화재수리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경력 또는 인원수를 강화된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16〉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그 문화재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할 때에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④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② 문화재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5조(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가 그 재료 또는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문화재수리 재료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한 경우	**제19조(하자담보책임 기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별표 9와 같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3. 발주자가 문화재수리의 목적물을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한 도급 계약서에 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다만, 그 특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완료하면 60일 이내에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등,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가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고증, 양식,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4절 감리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감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리	**제20조(감리대상 등)**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감리보고서)**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간감리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문화재감리원의 감리일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7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장이 그 문화재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분야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한다. 1. 상주감리원 한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 2. 비상주감리원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비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 이 경우 1명의 비상주감리원은 10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수 있다. ②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감리업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2.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3.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시공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 4. 품질시험 및 검사 현황 5. 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6.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7. 문화재수리 설계 변경 현황 8.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9. 문화재수리 전후 사진 10.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 및 감리 용역 개요 2.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3. 문화재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4. 검측 실적의 종합 5.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6. 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7.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한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감리의 경우에는 수리금액의 비중이 큰 문화재수리 분야의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문화재감리원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문화재감리업자가 스스로 문화재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	8.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 9.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10. 종합분석 11.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감리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이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0조(감리일지)**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설계도서·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재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문화재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문화재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그 밖에 문화재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제40조(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원이나 문화재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1조(감리의 제한)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제24조(감리의 제한)** 법 제4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문화재수리협회		
제42조(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①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제사업 등을	**제25조(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이하 "문화재수리협회"라 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문화재수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수리협회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문화재수리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지회나 분회를 둘 수 있다. ⑤ 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공제사업, 문화재수리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 분회(分會) · 지회(支會) · 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이나 문화재수리협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6조(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보증 ·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 · 손해배상보증 · 선급금지급보증 · 하자보수보증 2.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② 문화재수리협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문화재수리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문화재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협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③ 문화재수리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44조(「민법」의 준용)** 문화재수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감독 **제45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문화재수리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등의 발주자·문화재감리원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자에게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제46조(시정명령 등) ①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6.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나 문화재감리원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3.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4.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6.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제21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정지할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기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 2. 자격종목 및 자격번호 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제48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7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제22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7.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8.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9.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10.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일 이내인 경우 [본조신설 2014.11.1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4. 제3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5.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16. 제39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17.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18.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일부터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문화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수리업자등이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50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노임(勞賃)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문화재수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노임을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4. 제12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6. 제1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2. 법 제51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인지 3. 법 제51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증지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나. 가목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나. 가목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법 제5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수수료의 금액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4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없으면 그 직무상 알게 된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감독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2.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제5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범위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한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감리의 경우에는 수리금액의 비중이 큰 문화재수리 분야의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문화재감리원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문화재감리업자가 스스로 문화재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제20조(감리일지)**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법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①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감리원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2.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제24조(보수교육 수료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은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보수교육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2. 문화재감리원 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감리원이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각각 3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보수교육의 수료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보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문화재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0〉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2.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제54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또는	**제29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25조(문화재수리의 평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가 90퍼센트 이상 완료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실측설계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가 지정기간 동안 제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재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문화재수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수리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2. 실측설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실측설계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실측설계 ②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발주자 2.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3. 지정일 및 유효기간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수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4의 문화재수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문화재수리 평가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문화재수리 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 ④ 문화재수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업자가 분담하는 문화재수리별로 평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실측설계의 평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측설계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5의 실측설계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우수 문화재수리업자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별표 4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별표 5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측설계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1호서식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청문)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2.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3.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 및 제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2.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재청장(제3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상속의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제한: 2015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감리대상 등: 2015년 1월 1일 5. 제21조 및 별표 10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12.16.]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0.]
제7장 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자 2. 제47조(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다) 또는 제4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자 또는 영업을 한 자 3. 제10조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나 실측설계를 하게 한 자 2. 삭제 〈2015.3.27.〉 3. 제10조제4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4.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 또는 시행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5.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자 8.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부칙 〈제9999호,2010.2.4〉	부칙 〈제22638호,2011.1.26〉	부칙 〈제77호,201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4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1항제14호 · 제15호, 제53조 및 제59조제6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5항 중 자격시험 응시 요건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8조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6 제19호 및 제20호는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4조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에 따른 감리는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으로 보는 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본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12년 2월 5일에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최초의 보수교육은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5일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부칙 〈제118호,2012.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 중 실측 · 설계업자 또는 실측 · 감리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20호,2012.7.1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제5조(문화재수리등 시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따라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문화재수리등을 시행중인 것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수리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②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제37조제2항제4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제3항제5호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제3항제6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별지 제4호서식 6쪽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생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530호,2012.12.11〉** (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단서 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759호,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43호,2012.7.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24676호,2013.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2693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문화재수리업자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11호,2014.11.11〉**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48호,2015.3.2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854호,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호·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2호,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5.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50호, 2015.3.27,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2.16,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 2016.2.29, 타법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50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고 시설물의 층수가 3층 미만으로서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문화재수리의 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20조, 제21조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1 제2호차목, 별표 2 제2호카목1) 또는 2)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있어서 각각 별표 1 제2호차목, 별표 2 제2호카목2) 또는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종전의 별표 2 제2호사목 또는 자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6호,2016.2.29〉**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미한 문화재수리(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	가.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나.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다. 누수 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라.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와고르기 하는 행위 마.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바.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사. 잔디를 보식(補植)하거나 깎는 행위 아.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지(蓮池)를 준설하는 행위 자. 보호책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차.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차.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카. 성곽이나 건물지 등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타.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파.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하. 기존 너와·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거.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 포방전 또는 전돌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너.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더. 자생 초화류를 심는 행위 러.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머.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조경	가. 제1호의 경미한 문화재수리에 해당하는 행위 나. 기존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로서 수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 기존 시설물의 내부를 정비하는 행위 라.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별표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

종 류	업무 범위
1. 보수기술자	가. 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 및 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2. 단청기술자	가. 단청분야[불화(佛畵)를 포함한다]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3. 실측설계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4. 조경기술자	가.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5. 보존과학기술자	가. 보존처리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6. 식물보호기술자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별표 3] 삭제 <2014.12.16.>

[별표 4] <개정 2014.12.16.>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9조제2항 관련)

종류	공통과목(2과목)	전공과목(3과목)	
	선택형	선택형	논술형
1. 보수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시공
2. 단청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색채론, 도학(圖學)
3.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
4. 조경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조경사	전통조경, 조경설계 및 시공
5. 보존과학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화학	보존과학개론, 문화재수복기술개론
6. 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토양학	수목생리, 수목병충해

비고

"문화재관련법령"이란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 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별표 5]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일부 면제과목(제9조제3항 관련)

종류	공통과목에서 면제되는 과목	전공과목에서 면제되는 과목
1. 보수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건축구조
2.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건축실측
3. 조경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전통조경
4. 보존과학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보존과학개론
5. 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수목생리

[별표 6] [시행일:2014.2.5] 별표6제19호, 별표6제20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1조제2항 관련)

종류		업무 범위
1. 한식목공	대목수	목조 건조물의 해체·조립 및 치목(治木)과 그에 따른 업무
	소목수	목조 건조물의 창호·단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2. 한식석공	가공석공	석재의 가공과 그에 따른 업무
	쌓기석공	석조물의 축조·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3. 화공		단청(불화를 포함한다)과 그에 따른 업무
4. 드잡이공		드잡이(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바로잡는 일을 말한다)와 그에 따른 업무
5. 번와(飜瓦)와공		기와의 해체 및 번와와 그에 따른 업무
6. 제작와공		기와·전(塼) 등의 제작과 그에 따른 업무
7. 한식미장공		미장과 그에 따른 업무
8. 철물공		철물 등의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9. 조각공	목조각공	목재를 이용한 조각, 목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석조각공	석재를 이용한 조각, 석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0. 칠공		옻 등의 전통 재료를 이용한 칠, 칠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1. 도금공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2. 표구공		표구, 표구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3. 조경공		조경의 시공과 그에 따른 업무
14. 세척공		세척과 그에 따른 업무
15. 보존과학공	훈증공	재료나 자재의 살균·살충·방부 등을 위한 훈증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처리공	보존처리와 그에 따른 업무
16. 식물보호공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과 그에 따른 업무
17. 실측설계사보		실측 및 설계도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8 박제 및 표본제작공		박제·표본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9. 모사공		서화류의 모사와 그에 따른 업무
20. 온돌공		온돌의 해체·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별표 7] <개정 2014.12.16.>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1. 종합문화재수리업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수단청업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한식목공(대목수) 1명과 한식미장공, 번와와공, 화공, 드잡이공, 한식석공, 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2. 전문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목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대목수 1명과 한식목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상			
석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쌓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번와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번와와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3. 문화재실측설계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 실측설계업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법인	-	사무실
			개인	-	

4. 문화재감리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시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감리업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문화재수리업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이민, 학교·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 또는 신고 등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실측설계기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실측설계기술자가 문화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4호 문화재감리업 등록의 기술능력 산정 시 그 실측설계기술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가.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문화재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8]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구 분	종류(업종)	업무 범위
종합 문화재 수리업	보수단청업	가. 건축·토목공사 및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전문 문화재 수리업	조경업	가. 조경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과학업	가. 보존처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식물보호업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단청공사업	가.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목공사업	가. 목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석공사업	가. 석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번와공사업	가. 번와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비고

위 표의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 중 가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목공사업, 석공사업 및 번와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2. 단청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별표 9]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

종류	세부 공종	책임 기간
1. 성곽	가. 석성(石城)	
	1)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5년
	2)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3년
	나. 토성(土城), 혼축성(混築城)	2년
	다. 전축성(塼築城)	3년
	라. 목책성(木柵城)	1년
2. 탑·석조물	가. 석불(石佛), 부도(浮屠), 비석(碑石), 석등(石燈), 당간지주(幢竿支柱), 지석묘(支石墓), 석빙고(石氷庫), 석탑(石塔), 석교(石橋) 등	5년
	나. 전탑(塼塔)	3년
	다.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石材部)	5년
3. 목조건축물	가. 지붕	
	1) 산자(橵子) 또는 개판(蓋板) 이상의 기와지붕	3년
	2)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2년
	3) 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1년
	4)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1년
	나. 목부재(木部材)	
	1) 기둥, 창방(昌枋),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3년
	2) 그 밖의 구조재	2년
	다.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1년
	라. 기초 및 기단	
	1)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10년
	2)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7년
	3) 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石造) 기단·월대(月臺)	5년
	4)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3년
	마. 미장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1년
	바. 건축물의 단청(벽화, 불화 포함)	2년
4. 담	가. 사괴석(四塊石) 담장	3년
	나. 돌담, 자연석담, 판축(版築)담, 토(土)담, 전축(塼築)담, 와편(瓦片)담	2년

5. 분묘	가. 봉분 시설(잔디심기는 제외한다) 나. 구조부 1) 적석총(積石塚), 석곽묘(石槨墓) 2) 전축분(塼築墳) 3) 목곽묘(木槨墓) 다. 병풍석(屛風石)	2년 5년 3년 1년 3년
6. 도로	가. 암거(暗渠), 배수로, 측구(側溝), 맨홀 나. 포장 1) 박석(薄石), 포방전(舖方塼) 2) 마사토(磨砂土), 강회다짐, 혼합토 등	2년 2년 1년
7. 철물	가.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나. 구조철물, 보강철물	2년 3년
8. 조경·식물보호·발굴지정비·벽화 등	가. 조경 시설물 및 조경 식재 나. 식물 보호 다. 발굴지 정비 라. 불상개금(佛像改金), 도금(鍍金), 탱화, 옻칠 등	2년 3년 2년 5년
9. 문화재보호·보강시설	전통한옥양식 건축물 또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5년

<적용방법>

1. 위 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기초부터 다시 복원하거나 신설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위 책임 기간의 3분의 2로 한다.
   가. 기존의 유구(遺構)나 건축물의 가구 등에 덧붙이거나 보충하여 복원·보수하는 경우
   나. 기존 구조나 부재를 해체한 후 해체한 부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복원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2. 위 표에 없는 문화재수리 공종(工種)은 위 표의 유사공종에 따르며, 현대식 재료·공법으로 시공한 구조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서 공종별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 기간이 긴 기간으로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한다.

[별표 10]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제21조제2항 관련)

구분	업무범위
1. 상주감리원	가. 문화재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라.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문화재수리를 위한 문화재 원형의 확인,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확인 바.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사.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아.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자. 문화재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차.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카. 완료 도면의 검토 및 완료 사실의 확인 타. 그 밖에 문화재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비상주감리원	가. 문화재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다. 문화재수리를 위한 문화재 원형의 확인,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확인 라.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마. 문화재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바. 완료 도면의 검토 및 완료 사실의 확인 사. 그 밖에 문화재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 11]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1. 상주감리원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 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주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
2. 비상주감리원	제1호에 따른 상주감리원의 상주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50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	50
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	50
라.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	100
마.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5호	100
바.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6호	50
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7호	100
아.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8호	50
자.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9호	50
차.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0호	50

[별표 1] <개정 2015.2.25.>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4분의 3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라.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3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5개월	자격정지 2년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마.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등을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4)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법 제4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때에는 제외한다.				
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능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 제5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아.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자.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차.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연속적으로 5일 이상 이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기둥·보·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축물

(가) 성벽·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지대석(地臺石)·면석(面石)·여장(女墻) 및 성문·암문(暗門)·수문

(나) 석탑·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기단·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능·분묘·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벽화·괘불·공예품·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부위(部位)·조경물

[별표 2] <개정 2015.2.25.>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라.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다.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법 제15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 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	법 제49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다]. 다만, 법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바. 법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합병 또는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사.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아.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차.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1)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도급받은 문화재수리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영 제18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영 제18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6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타. 법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하. 법 제3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거.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5호			
1)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3)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너.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6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다만, 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수요부"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기둥·보·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축물

(가) 성벽·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지대석(地臺石)·면석(面石)·여장(女墻) 및 성문·암문(暗門)·수문

(나) 석탑·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기단·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능·분묘·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벽화·괘불·공예품·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부위(部位)·조경물

[별표 3]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수수료
1. 자격시험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2만원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2만원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5천원
3.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재발급	5천원
4.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가. 종합문화재수리업	5만원
나. 전문문화재수리업	3만원
다. 문화재실측설계업	3만원
라. 문화재감리업	3만원
5.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5천원

[별표 4]

문화재수리 평가기준(제25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1. 현황조사	○ 문화재수리 전 사전조사 및 문화재 특성조사 - 사전 설계도서 검토 여부 - 문화재 현황, 전통기법 및 양식, 전통재료 등 - 문화재수리로 영향을 받는 주변 환경 조사 등	10
2. 시공관리	○ 문화재수리 계획의 수립·실시 ○ 문화재수리 상태 -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 - 주요 공종의 시공 및 마감 상태의 적정 여부 - 해체·조립의 적정성 여부 -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활용	30
3. 품질관리	○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품질관리 상태 - 각종 시험의 실시 여부 - 적정한 자재 사용 여부 및 관리상태 - 잔여 부재의 재사용 여부 - 전통도구의 사용 및 전통기법 이행 여부	15
4. 공정관리	○ 공정관리 - 공정표의 작성 및 관리 여부 - 문화재수리 기간 중 전체 계획 대비 실적 - 문화재수리 현장의 주변 여건 등 공정의 난이도	15
5. 안전 및 환경관리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안전관리 교육 실시, 위험·안전 표지판의 설치 -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 실태 - 주변 환경의 훼손 여부	10
6. 현장관리	○ 현장관리 - 발주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지시사항 이행 실태 - 현장관리를 위한 인원 배치의 적정성 여부 - 자재 및 현장의 정리·정돈 상태 - 현장관리의 소홀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10
7.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 현황 및 원형조사, 부재조사 등 조사기록의 충실 여부 - 세부 공사 내용 등의 기록 충실 여부 - 각종 자료정리 상태	10

2.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문화재수리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 비고

1. 문화재수리의 평가 시 평가등급은 우수(점수로는 배점×1), 양호(점수로는 배점×0.9), 보통(점수로는 배점×0.8), 불량(점수로는 배점×0.6)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위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별표 5]

실측설계 평가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1. 기본조사	○ 문화재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 ○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 ○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 ○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 여부 ○ 실측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	25
2. 실측조사	○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 ○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 ○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 ○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 ○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 여부 ○ 평면·입면·단면·천정·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	25
3. 내역산출	○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 ○ 일위대가(一位代價)의 적정 여부 ○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 ○ 공사비 산출(견적) 내용의 적정 여부	10
4. 도서작성	○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 ○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 ○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 ○ 책임기술자 등 설계 관련자의 서명·날인 여부 ○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	10
5. 그 밖의 항목	○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 ○ 문화재의 원형보존 여부 ○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	20

2.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실측설계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 비고

1. 실측설계의 평가 시 평가등급은 우수(점수로는 배점×1), 양호(점수로는 배점×0.9), 보통(점수로는 배점×0.8), 불량(점수로는 배점×0.6)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위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실측설계 중 정밀실측설계의 경우에는 내역산출에 대한 평가 배점 10점을 실측조사와 도서작성에 각각 5점씩 배분하여 평가한다.

문화재보호기금법

(법률 · 시행령)

문화재보호기금법 법률-시행령 목차

문화재보호기금법 [법률 제13963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 437	제1조(목적) ····· 437
제2조(정의) ····· 437	
제3조(기금의 설치) ····· 437	
제4조(기금의 조성) ····· 437	제2조(문화재보호기금의 조성) ····· 437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 437
	제14조(기금의 수납) ····· 438
제5조(기금의 용도) ····· 438	제4조(기금의 용도) ····· 438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438	제5조(기금의 관리 · 운용) ····· 438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 439
제7조(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 439	제7조(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439
	제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 440
	제8조(위원장의 직무) ····· 440
	제9조(회의) ····· 440
	제10조(간사) ····· 440
	제11조(수당) ····· 441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 441	
제9조(기금의 회계처리) ····· 441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 441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 441
제11조(기금 계정의 설치) ····· 441	제13조(기금 계정) ····· 441

문화재보호기금법 [법률 제13963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 441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 441
	제16조(장부의 비치) ····· 441
제1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442	
부 칙 ····· 442	부 칙 ····· 442

문화재보호기금법 2단비교표(법률 - 시행령)

문화재보호기금법 [법률 제13963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재" 및 "지정문화재"란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 및 지정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납부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2조(문화재보호기금의 조성)** 「문화재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②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문화재에 대한 지원에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징수절차·징수방법·납부시기 및 납부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을 납부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관람료 징수 영수증, 징수명세서, 징수 통장 등 기초 자료를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기금법 [법률 제13963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제14조(기금의 수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2.3.> 1.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2. 훼손 · 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3. 매장문화재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 5.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 6. 문화재 보존 · 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7. 그 밖에 문화재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1.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2.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 4.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5. 기금의 징수 및 관리 ·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문화재청장이 관리 · 운용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이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납부금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금의 결

문화재보호기금법 [법률 제13963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산보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4.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제7조(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문화재보호	**제7조(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문화재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문화재보호기금법 [법률 제13963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재청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문화재보호기금법 [법률 제13963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제11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재청장은 기금지출관에게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 계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장부의 비치) 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 징수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총괄 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기금법 [법률 제13963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제1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9756호, 2009.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92호, 2014.5.28.〉** (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부칙 〈제13963호, 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72호, 2009.12.7.〉**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844호, 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 시행령)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시행령 목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13875호, 2016.1.27., 일부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6.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447	제1조(목적) ····· 447
제2조(정의) ····· 447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 448	
제4조(정관) ····· 448	
제5조(기본계획) ····· 449	제2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449
제6조(시행계획) ····· 450	제3조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450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 절차) ····· 450
	제5조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 451
제7조(보전 · 관리계획) ····· 451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 451	제6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 451 제7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 452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 452	제8조 (재산현황의 공개 등) ····· 452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 453	
제11조(지정기탁재산) ····· 45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13875호, 2016.1.27., 일부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6.26., 타법개정]
제12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 453	
제13조(이용료 및 입장료) ····· 453	제9조 (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 453
제14조(회계 등) ····· 454	제10조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 454
	제11조 (예산 및 결산서의 공개) ····· 454
제15조(조세감면) ····· 455	
제16조(재정지원) ····· 455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제17조(총회 및 이사회) ····· 455	
제18조(준용) ····· 456	
제5장 보전협약	
제19조(보전협약) ····· 456	제12조 (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 456
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 456	제13조 (권리변동의 통지내용) ····· 456
제6장 보칙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 457	제14조 (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 457
제22조(모금) ····· 458	제15조 (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 ····· 458
제7장 벌칙	
제23조(과태료) ····· 458	제16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458
부칙 ····· 459	부칙 ····· 45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2단비교표(법률 - 시행령)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13875호, 2016.1.27., 일부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6.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 · 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 · 기업 ·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 · 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 · 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보존 · 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 다.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와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3.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 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13875호, 2016.1.27., 일부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6.26., 타법개정]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보전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보전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①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 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방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13875호, 2016.1.27., 일부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6.26., 타법개정]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종류 · 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이사 및 감사의 정수 ·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9. 이사의 의결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보전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의 요건 · 내용 · 절차에 관한 사항 15. 보전재산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 16.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에 이바지한 자의 명예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 국민신탁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 ·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 · 관리를 위한 목표 ·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보전재산의 기준 · 분류에 관한 사항	**제2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 · 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 · 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국민신탁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13875호, 2016.1.27., 일부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6.26., 타법개정]
3.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조사 및 목록작성에 관한 사항 ③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국가의 국방·군사, 농지·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시행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교육·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13875호, 2016.1.27., 일부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6.26., 타법개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의 일반재산의 취득·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보전·관리계획) 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①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경우 가. 문화유산의 명칭·위치·면적·재산현황 나. 문화유산의 작자·유래 다. 문화유산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형태 라. 문화유산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13875호, 2016.1.27., 일부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6.26., 타법개정]
	마.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보전상황 바.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자연환경자산의 경우 가. 자연환경자산의 명칭 · 위치 · 면적 · 재산현황 나. 지형 · 지질 · 자연경관의 특수성 다. 자연생태현황(식생현황, 멸종위기 야생동 · 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을 포함한다) 라. 토양의 특성 마. 그 밖에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방법은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 · 자료 ·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13875호, 2016.1.27., 일부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6.26., 타법개정]
②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별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국민신탁법인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전 및 운용) ①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보전·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전재산은 이를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일반재산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및 보전·관리와 국민신탁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지정기탁재산) ①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 또는 관리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현금·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하 "지정기탁재산"이라 한다)은 기탁자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기탁재산은 지정된 용도별로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이용료 및 입장료)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는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13875호, 2016.1.27., 일부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6.26., 타법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7. 그 밖에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④ 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 또는 입장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 등) ① 국민신탁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국민신탁법인은 사업실적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민신탁법인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예산 :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제11조 (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13875호, 2016.1.27., 일부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6.26., 타법개정]
제15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 ·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재산의 보전 ·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제17조(총회 및 이사회)** ① 국민신탁법인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민신탁법인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기본계획안의 수립 2. 시행계획안의 수립 3. 보전재산에 대한 보전 · 관리계획의 수립 4. 보전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 5. 보전재산의 취득 ·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운용계획 7.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13875호, 2016.1.27., 일부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6.26., 타법개정]
제18조(준용) 국민신탁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전협약	
제19조(보전협약) ①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과 협약(이하 "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이 당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성실하게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당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대차하여 직접 보전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보전협약의 내용 및 체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현황을 협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은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거나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민신탁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변동의 통지내용)** 법 제20조에 따른 권리변동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해 재산(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재산"이라 한다)의 소재지·면적 및 권리내용 2.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시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3.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의 변동사유·변동일 또는 변동예정일 4. 당해 재산의 새로운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13875호, 2016.1.27., 일부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6.26., 타법개정]
제6장 보칙	
제21조(행정계획 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1.7.21〉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협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 : 당해 계획의 수립·확정 전 2. 개발사업 : 당해 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후 그 결과(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필요성·사업기간·소요예산·추진절차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2. 대상지역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3.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보전재산의 명칭, 지번, 지목 및 면적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 조회결과 및 반영내용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류 1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또는 시디롬(CD-ROM)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13875호, 2016.1.27., 일부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6.26., 타법개정]
제22조(모금) ①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모금을 할 수 있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모금 목적 외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 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모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개시일 1개월 이전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금목적 및 그 사용계획·모금지역·모금기간·모금예정총액 등이 기재된 모금계획서 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② 국민신탁법인은 모금이 중단되거나 완료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모금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전재산을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기탁재산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금한 기부금품을 모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16.1.27.〉 ④ 삭제 〈2016.1.27.〉 ⑤ 삭제 〈2016.1.27.〉	**제1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관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13875호, 2016.1.27., 일부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6.26., 타법개정]
부칙 〈제7912호, 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신탁법인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공포 후 2월 이내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보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 15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와 자연환경국민신탁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원의 연명으로 국민신탁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국민신탁법인의 이사회에 인계하고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37호, 2008.3.28.〉**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한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⑪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 〈제19945호, 2007.3.22.〉**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73호, 2009.6.2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13875호, 2016.1.27., 일부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6.26., 타법개정]
제19조 생략 **부칙 〈제10892호, 2011.7.21.〉**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⑨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977호, 2011.7.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13875호, 2016.1.27., 일부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6.26., 타법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3875호, 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13979호, 2016.2.3.,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7.10., 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7.12., 제정]
제1조(목적) ····· 467	제1조(목적) ····· 467	제1조(목적) ····· 467
제2조(설치) ····· 467	제2조(소재지) ····· 467	
제3조(운영의 원칙) ····· 467		
제4조(총장) ····· 467		
제5조(교직원 등) ····· 467	제3조(교원 등의 임용 등) ····· 467	
제6조(학교규칙) ····· 468	제4조(학교규칙) ····· 468	
제7조(단과대학) ····· 470	제5조(단과대학) ····· 470	
제8조(대학원) ····· 470	제6조(대학원) ····· 470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 471	
	제8조(대학원위원회) ····· 472	
제9조(학생의 정원) ····· 473	제9조(학생의 정원) ····· 473	
제10조(입학자격) ····· 474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 ····· 474	제10조(입학전형) ····· 474	
제12조(수업연한) ····· 474	제11조(수업연한) ····· 474	
제13조(학위의 수여) ····· 474		
제14조(전통문화전문과정) ····· 475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 475	
제15조(부속시설 등) ····· 475	제13조(부속시설 등) ····· 47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13979호, 2016.2.3.,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7.10., 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7.12., 제정]
제16조(하부조직) ····· 475	제14조(하부조직) ····· 475	
제17조(교육재정 등) ····· 476	제15조(월정직책급 등) ····· 476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 476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 477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 477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477		
제20조(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 477		
제21조(과태료) ····· 477		
부칙 ····· 478	부칙 ····· 478	부칙 ····· 478
	시행령 별표 ····· 48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3단비교표(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13979호, 2016.2.3.,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7.10., 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7.12.,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소재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충청남도로 하되,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제3조(운영의 원칙)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총장)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은 문화재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교직원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제3조(교원 등의 임용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13979호, 2016.2.3.,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7.10., 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7.12., 제정]
교원 ·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② 교원은 교수 · 부교수 · 조교수와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⑤ 교원 · 직원 · 조교 · 겸임교원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원 · 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학교규칙)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학교규칙)**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설치 학과 · 전공 및 학생정원 2. 수업연한 · 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입학 · 편입학, 휴학 · 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轉科), 자퇴 · 제적 · 유급 · 수료 및 졸업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13979호, 2016.2.3.,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7.10., 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7.12., 제정]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신청 8.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학생 포상 및 징계 12. 수업료 · 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1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4. 교무위원회 · 기획위원회 등 위원회의 설치 · 운영 15. 교수회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으로 위임되거나 전통문화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업연한, 학기 및 수업일수 2. 입학, 재입학 · 편입학, 휴학 · 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 자퇴 · 제적 · 유급 · 수료 · 졸업 및 징계 3. 교과의 이수단위 4. 학점인정 5.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교수회에 관한 사항 ③ 총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13979호, 2016.2.3.,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7.10., 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7.12., 제정]
	미리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단과대학)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둔다. ③ 단과대학의 장은 총장의, 학과의 장은 단과대학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5조(단과대학)**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3개 이하의 단과대학을 둔다.	
제8조(대학원) ①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조(대학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1개의 일반대학원과 2개 이하의 전문대학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2. 전문대학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를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13979호, 2016.2.3.,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7.10., 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7.12., 제정]
	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술학위 2.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전문학위.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대학원 및 대학원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되고,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된다. **제7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과 또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13979호, 2016.2.3.,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7.10., 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7.12., 제정]
	3.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을 포함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학·연·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8조(대학원위원회)**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1. 대학원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연구개발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13979호, 2016.2.3.,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7.10., 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7.12., 제정]
	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전통문화대학교의 교수 · 부교수 및 3급 · 4급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문화재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대학원 과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1호(전통문화대학교의 3급 · 4급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학생의 정원)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학생의 정원)**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 인력의 수요 전망과 전통문화대학교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전체 학생정원을 조정 · 책정하고, 과정별 · 학과별 · 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13979호, 2016.2.3.,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7.10., 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7.12., 제정]
제10조(입학자격) 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총장은 제1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입학전형)** ① 총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사과정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업연한) ① 전통문화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수업연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학사·석사 통합과정: 1년 이내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6개월 이내	
제13조(학위의 수여) ①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13979호, 2016.2.3.,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7.10., 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7.12., 제정]
②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4조(전통문화전문과정) ① 전통문화 및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② 전통문화전문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③ 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① 법 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교육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및 외국의 문화재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 · 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부속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 · 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 · 대학원 또는 학과의 장 중에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관련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16조(하부조직) 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하부조직)** 법 제16조에 따른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13979호, 2016.2.3.,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7.10., 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7.12., 제정]
제17조(교육재정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전통문화 관련 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월정직책급 등)** 교수 ·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단과대학의 장,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 대학원의 장,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 ·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 ·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補職)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 입학금 감면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奬學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및 기성회비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통문화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숙식비 · 교통비 및 연수비 등 학자금 보조 ② 제1항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는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금액(제1항제4호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13979호, 2016.2.3.,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7.10., 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7.12., 제정]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및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원의 배치기준)** ① 전통문화대학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인문 · 사회계열: 25명 2.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능계열: 각각 20명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학사과정의 학생정원과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 수를 말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통문화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2.3.〉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13979호, 2016.2.3.,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7.10., 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7.12., 제정]
부칙 〈제10830호, 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전통문화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전통문화학교(이하 "한국전통문화학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본다. **제3조(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재직 중인 총장·교원·직원 및 조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교원·직원 및 조교로 본다. **제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승계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3943호, 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란 제1호가목 단서 중 "교육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을 "교육대학의 총장"으로 한다. 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③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제23호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부칙 〈제120호, 2012.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 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6쪽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0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13979호, 2016.2.3.,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7.10., 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7.12., 제정]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6〉까지 생략 〈2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79호, 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대학원장·학장·학과장)**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 및 단과대학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대학원장 및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한다. ② 대학원장·학장 및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대학원·단과대학 및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제13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각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5조제2항 중 "연수원"을 "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9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4호 중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전통문화연수원)"을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문화연수원에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를 "전통문화교육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기획과장"을 "교육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7조에 따른 연수교육과정"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 중 "연수원"을 각각 "전통문화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운영과장"을 "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13979호, 2016.2.3.,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7.10., 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7.12., 제정]
	통문화대학교”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 중 “연수원”을 각각 “교육원”으로 한다.	통문화대학교”로 하고, 같은 표 중 “한국전통문화학교 계”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로, “전통문화연수원 계”를 “전통문화교육원 계”로 한다.

[별표]

부속시설등(제13조제1항 관련)

시설	구분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 대학원 연구실,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원, 전통문화연구소, 문화재예방보존연구소, 문화유산정책연구실, 전통건축도자센터 및 그 부대시설	
부속시설	공통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인문·사회계열	유적 발굴 실습실, 전통교양교육원 및 그 부대시설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학술림, 전통조경 실습실, 고건축물(古建築物) 복원 실습장, 공학교육지원센터 및 그 부대시설
	예능계열	전통미술공예 실습실, 전통문화상품 개발실 및 그 부대시설
그 밖의 시설	체육관, 강당, 정보전산원, 실습공장, 학생기숙사, 전통기능교육센터, 건축문화재 정보분석교육센터, 보건진료소, 공동실험실습관 및 그 부대시설	
비고: 대학원,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부속시설등은 문화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문화재관계법령집

발 행 일 : 2016년 4월
발 행 인 : 문화재청
발 행 처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1동)
전 화 : 042) 481-4789
팩 스 : 042) 481-4649

인 쇄 처 :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전 화 : 042) 256-4833
팩 스 : 042) 257-4833

ISBN 978-89-299-0844-7 93360